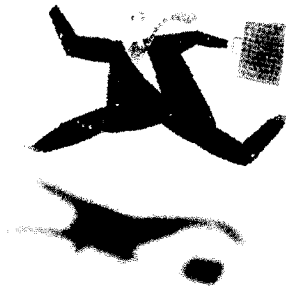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경계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머리말

지금 우리나라는 6·25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림과 동시에 과거 우리가 소홀히 하였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에 의한 기업인수·합병 및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유인제도를 확충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사실 외국인투자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오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상당수의 국민들은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을 인수하거나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우리 경제를 자신들의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기거나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책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발간되었다.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가져다 주는 이익을 기존 문헌 및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준동, 김관호, 이성봉, 윤미경 박사를 비롯하여 박

영호, 신동화, 김종근, 이형근 연구원에게 감사한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일반국민은 물론 학계, 연구계, 업계 및 정책당국자들에게 널리 읽혀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 데 기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8년 12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李景台

국문요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지식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오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국인투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제도, 투자자관계관리, 국경간 M&A, 무역관련 투자장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bstract

Since the onset of the economic crisis in late 1997,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government liberalized crossborder M&As and foreign land ownership. It also enacte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o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foreign investors. The ne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treamlined foreign investment procedures, strengthened investment incentives, and established a one-stop service and ombudsman system.

Even though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becoming more favourable, some people still hold concerns that foreign acquisition of domestic firms translates into foreign dominance. Hence, what is needed is a further educa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rder to further promote such investment. Such education is necessar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is to create a welcoming domestic environment.

Therefore, this book seeks to help the Korean people understan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brings not only foreign capital but also advanced technology and managerial skills. Further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can benefit current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attempt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economy. In sum, this book aims to deliver a clear message that we need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not only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but also to make the economy more healthy and efficient.

The contained analyses are based on available studies and case evidences throughout the world. Special emphasis is given to cases concerning Latin American and Asian countries that suffered similar economic crises. We recommend this book to the general public, academia, and business people as well as to policymakers to further spread what we believe is a balanced and objective view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목 차

머리말	5
-----	---

I. 서론 · 15

II.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 21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3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25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8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36

III.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 45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47
2. 세수증대 효과	51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52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63
5. 고용창출 효과	67
6. 외국인투자자 환경보호	70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72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77

IV.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87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89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91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98
V.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11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113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114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122
4. 국경간 M&A의 활성화	128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130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131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132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134
9. 내부역량의 강화	135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136
VI. 결론	137
참고문헌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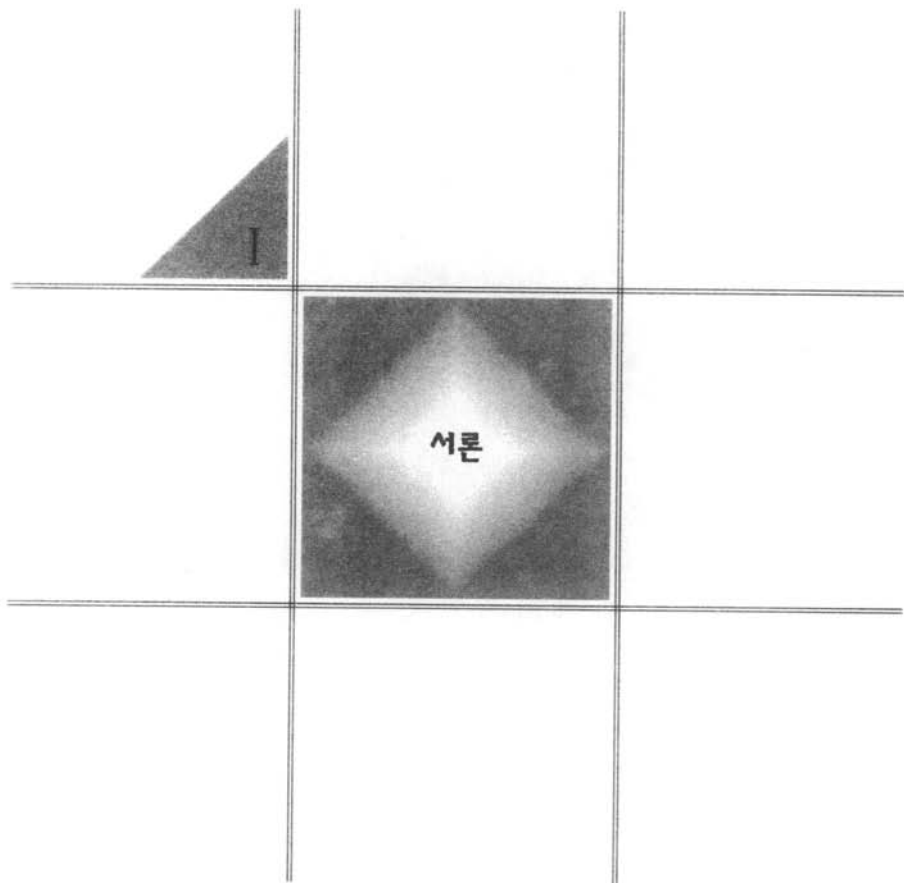
표목차

<표 2-1> 개발도상국의 자본유입구조 변화(1980~1997)	26
<표 2-2> 미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수출비중	27
<표 2-3> 아시아 금융위기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추이	30
<표 2-4>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추이 (1996~1998. 11)	31
<표 2-5> 국제직접투자 추이(1985~1997)	37
<표 2-6> UNCTAD / ICC 공동 설문조사 결과	43
<표 3-1>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현황 (1988~1995)	79
<표 3-2> 국가별 민영화관련 통계(1988~1995)	80
<표 3-3> 유입형태별 외국인투자: 아르헨티나, 멕시코	81
<표 3-4> 멕시코 Telmex의 민영화(1990~1993)	84
<표 4-1> 국제직접투자 관련 자유화조치	89
<표 4-2> G7 국가의 외국인투자 규제내용(주요 업종별)	92
<표 4-3>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사유로 한 내국민대우 제한분야(G7국가)	94
<표 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는 분야	102
<표 4-5>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황(1998년 10월 현재)	106
<표 4-6>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107
<표 4-7> 무역자유화에 관한 IMF와의 합의내용	109
<표 5-1> 투자자관계관리의 방법	125

그림목차

<그림 1-1> 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1992~1997)	19
<그림 2-1> 아시아 금융위기와 외국자본의 유입추이 (1994~1997)	29
<그림 2-2>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992~1997)	33
<그림 2-3> 주요 지역·국가별 직접투자 유출입 규모 (1992~1996)	38
<그림 2-4> 국경간 M&A 추이(1992~1997)	40
<그림 2-5> 아시아 5개국의 국경간 M&A를 통한 기업매각 (1997년)	41







최근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수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투자는 곧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는 사용권보다는 소유권을 중시해 온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략 등을 거치면서 생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는 높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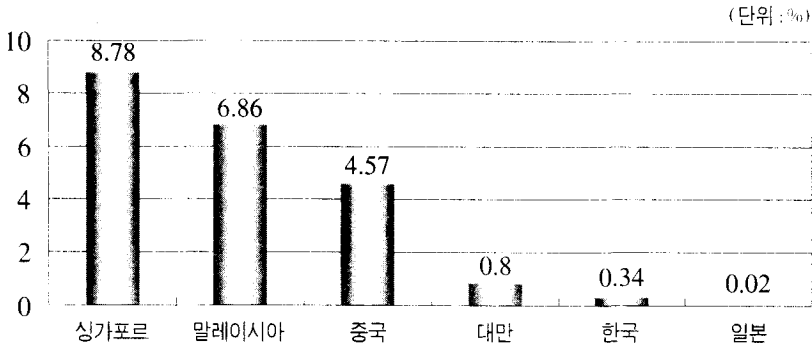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외환·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단기성 외채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이 꼽히고 있다. 이를 인식한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유인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 높은 금리나 자본이득(capital gain)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성 투자자금은 상황에 따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곧바로 철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컨대 한 번 지어 놓은 공장을 제값을 받고 신속히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성격상 외국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하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 외화를 빌려 오면 “빚”이어서 이자를 물고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직접투자 형태로 들어오면 “자본”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외채나 단기성 투자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고용창출, 기술이전 효과 등을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을 통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고용과 생산의 증대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며, 국내세수(local tax revenue)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양하고 넓은 해외수출시장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힘입은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1992~1997년중 각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0.34%로, 일본(0.02%)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싱가포르(8.78%), 말레이시아(6.86%), 중국(4.57%), 멕시코(2.1%), 영국(1.8%), 인도네시아(1.5%), 대만(0.8%), 미국(0.7%) 등 대부분의 경쟁국과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1-1> 참조). 이는 우리나라가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단순한 해외차입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언어 및 관습상의 장벽 등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림 1-1〉 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1992~1997)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각년호.

토지·건물·기계 등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도 지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0.9%에 불과하여, 세계 최대의 자본수출국인 일본(0.1%)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4.4%), 영국(11.6%)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25.4%), 말레이시아(18.1%), 중국(13.0%), 멕시코(11.9%), 인도네시아(4.6%), 대만(3.5%) 등 경쟁국들은 물론 후발개도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더욱이, 1998년 5월 홍콩의 경제주간지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가 아시아 지역 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도(openness)는 17.4%로 태국(57.3%)·말레이시아(21.1%)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부즈앨런 한국경제 관련 보고서는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성장을 이룬 반면에,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며 성장했다”며, 한국과 중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외환위기를 빠른 시일안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어야 한다. 지난 1994년 말 발

생한 멕시코 통화위기 때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II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는 넓은 의미에서는 자산개념으로, 좁은 의미로는 기업개념으로 정의된다.¹⁾ 넓은 의미로는 유·무형의 자산이 이전되어 富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한다.²⁾ 기업개념에 기초한 좁은 의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신규회사의 설립 및 확장, 기존기업의 인수·합병(M&A), 모기업 및 관련기업으로부터의 5년 이상의 대부 등이 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진출동기에 따라서 시장접근형과 생산거점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장접근형은,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특정 사업부문을 투자유치국(현지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진출시키는

-
- 1) 이하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국내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로 지칭하기로 한다. 단, 포트폴리오 투자를 따로 구별지어 지칭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한다.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inward(對內), inflow(流入)와 outward(對外), outflow(流出) 등의 용어를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함께 사용한다. 최근에는 이 두가지를 총칭하여 국제직접투자(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라 표현하기도 한다.
 - 2)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포트폴리오 투자와의 구분을 위해 외국인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간주하고 있다.

형태이다. 반면에 생산거점형은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투자유치국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차이

외국인투자는 크게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경영권을 확보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차이를 보면 포트폴리오 투자는 배당 내지는 이자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직접투자는 기업의 경영과 관리에의 참여를 통한 이윤증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이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현지국의 개인, 기업 또는 정부와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합작투자하여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 나름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직접투자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제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넘어,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 등 각종 생산요소들이 현지로 이전되어 현지의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과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빠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어, 개도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과거 개도국들이 주로 의존해 왔던 개발원조가 감소됨에 따라 대신에 직접투자가 자본유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유입은 개도국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무역신장으로 이어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개도국에 대한 국제자본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1970~1980년대와는 달리 직접투자 비중이 40%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표 2-1> 참조). 이는 1990년대 이후 개도국들이 개발원조금이나 해외차입보다 직접투자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게 되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1> 개발도상국의 자본유입구조 변화(1980~1997)

(단위: 구성비, %)

년 도	외국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자본투자	외 채 ¹⁾	공여금 ²⁾
1980	5.3	0	79.0	15.7
1996	42.3	16.3	31.1	10.4
1997	40.1	10.8	40.8	8.4

주: ¹⁾ IMF차관 제외한 순장기외채, ²⁾ 기술협력공여금 제외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한편 전세계적으로 직접투자 순유입이 국내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2.3%이던 것이 1996년에는 8.1%로 늘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0.6%에서 1.1%로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對GDP 비중은 1990년 0.6%에서 1997년에는 2.5%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³⁾ 이와 같이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총매출액이 198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 상품·서비스 수출 규모를 넘어섰고, 1996년 현재 총수출액(6조 1,110억 달러)을 초과하는 6조 4,000억 달러에 달하였다.⁴⁾

<표 2-2>는 중남미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총수출에 있어서 미국 기업 자회사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 기업 자회사의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약 10분의 1을 점하고 있다. 일본, 유럽, 신흥공업국의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이들 외국기업 자회사의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도 있다.

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pp. 256 - 257

4)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7.

〈표 2-2〉 미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수출비중

국 가	총수출(백만달러)	미국기업 자회사 수출비중	
		주부문(94년)	제조업(93년)
아르헨티나	15,659	9.3%	-
브라질	43,558	9.4%	13.1%
칠레	11,604	11.9%	-
인도네시아	40,054	13.5%	-
말레이시아	58,756	8.3%	11.2%
필리핀	13,304	10.2%	16.7%

자료 :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 Lessons from Six Emerging Economies*, 1998.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유입이 부진하다는 것은 바로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분업체제에서 탈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21세기 세계경제의 발전과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중남미와 1990년대 멕시코 및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통화·외환위기로 시작하여 전반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는데, 이의 해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198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중남미 각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외환의 유입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강화해 나갔고,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해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 증대 및 개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⁵⁾

가. 아시아 외환위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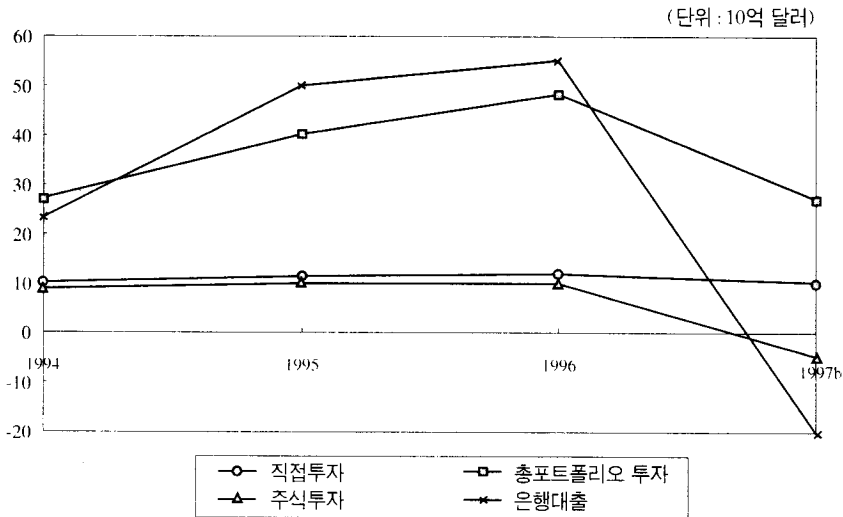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5개국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추이를 보면,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은행 차입은 각각 500억 달러 정도에서 300억 달러 및 -200억 달러 정도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⁶⁾,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100억 달러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그림 2-1> 참조). 이

5) 김영환, 「IMF 구제금융 이후 멕시코 경제회생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月刊『삼성경제』, 1998. 2

6) 은행차입이 -2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외국은행들이 그만큼 대출을 회수한 것을 의미한다.

와 같은 현상은 지난 1994년 12월 멕시코 폐소貨 위기 때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對멕시코 총포트폴리오 투자는 1994년 120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75억 달러로 대폭(37.5%) 감소한 반면에, 직접투자유입액 감소는 소폭(13%)에 그친 바 있다.

<그림 2-1> 아시아 금융위기와 외국자본의 유입추이(1994~1997)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표 2-3>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5개국에 대한 최근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실행기준)을 보여 주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96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에, 한국, 태국, 필리핀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들 5개국 전체의 직접투자 유입액은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인 164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8년에 들어서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5월간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액(허가기준)은 82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필리핀의 경우에도 1998년 7월 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동월에 비해 50%나 감소하는 등 1998년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1998년 상반기 투자실적이 56억 RM(링기트)을 기록했으며, 1998년 전체로는 작년 수준(115억 RM)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경우, 1998년 1~5월간 직접투자 유입액은 활발한 국경간 M&A 등으로 이미 1997년 전체 유입금액인 1천 170억 BT(바트)에 가까운 1천억 BT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11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는 1,227건의 69억 900만 달러(신고기준)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금액면에서는 16.4%가 증가하고 건수면에서는 31.8%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M&A에 의한 투자는 1998년 상반기에 6억 9,899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28.4%를 차지해 1997년의 1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환율절하

〈표 2-3〉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추이

(단위: 10억 달러)

년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인도네시아	2.0 (-)	2.1 (23.7)	4.3 (39.9)	6.2 (29.9)	4.1 (33.8)	- (8.25)	- 1~5월
한 국	0.6	0.8	1.8	2.3	3.1	1.5	1~6월
말레이시아	5.0	4.3	4.1	4.7	3.8	-	-
필리핀	1.2	1.6	1.5	1.4	2.9	0.7	1~6월
태 국	1.8	1.3	2.0	2.3	2.5	2.7	1~6월
합 계(A)	10.6	10.2	13.7	16.9	16.4	-	-
-아시아(B) ¹⁾	47.7	55.4	65.5	77.0	80.8	-	-
-A/B(%)	22.5	18.4	21.0	21.9	20.3	-	-

주: 실행액기준. 단 ()는 허가기준임. 1) 南·東·東南아시아.

자료: UNCTAD/ICC, *The financial crisis in Asi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8. 3. 및 각국 통계자료(1998년)

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1~7월까지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8월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및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9월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1월에는 월별 외국인투자액으로는 사상 최고수준인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에도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코리아 포럼」 개최(9~10월)를 통한 대외홍보 및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됨(11월 17일)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추이(1996~1998.11)

(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96년	97년	98년							
			1~3월	4~6월	7	8	9	10	11	1~11
금 액	3,203 (65.0)	6,971 (117.6)	572 (-73.1)	1,889 (-19.3)	1,235 (203.4)	407 (128.7)	534 (23.3)	894 (147.6)	1,378 (1,414)	6,909 (16.4)
건 수	968 (11.0)	1,055 (9.0)	309 (20.7)	370 (45.1)	100 (16.3)	96 (5.5)	145 (79.0)	88 (2.3)	117 (54.0)	1,227 (31.8)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재정경제부

나. 중남미

1982년 멕시코에서 시작되어 중남미 전역으로까지 확산된 외채위기로 이 지역의 경제상황은 급격히 변하였다. 외채위기로 인하여 은행대출은 거의 중단되었고 이자율이 급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확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외국

인직접투자는 선진기술의 도입 및 선진시장에의 접근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국경간 M&A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대출금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⁷⁾ 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림 2-2>는 멕시코 통화위기(1994년 12월)를 전후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흐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 포트폴리오 투자는 대폭적인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1994년에 전년대비 2.5배에 달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소폭의 감소세에 그쳤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신속한 투자철수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통화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투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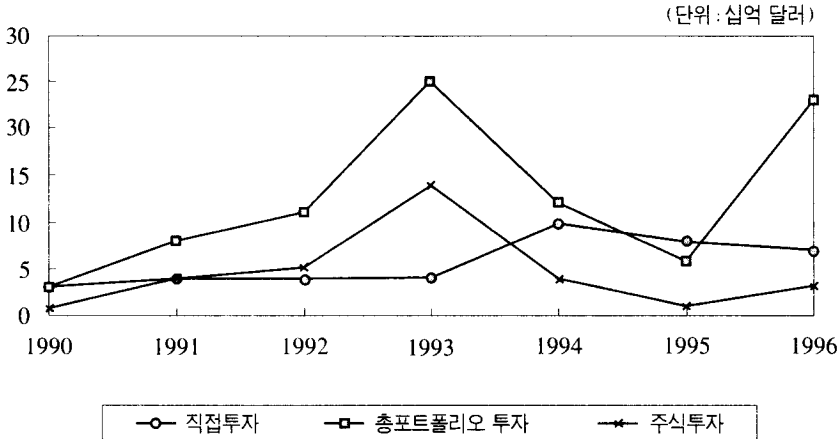
1994년 2차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1995년부터는 민간기업의 합병 및 분리시 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 유도하였다.⁸⁾ 이후, 멕시코 경제가 안정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 1997년에는 약 100억 달러(중남미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0%)로 1994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1994년 12월 발생한 멕시코 폐소화 위기의 여파로 여타 중남미 국가들도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94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11% 이상을 차지하였던 중남미 지

7)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의 빚을 탕감하는 대신에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조정 방식이다. 채권자는 기업의 빚과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기업의 경영을 향상시켜 수익을 높이는 것이 출자전환의 취지이다.

8) 온기운外,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KIET 정책자료』, 1998. 1. p. 16.

<그림 2-2>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992~1997)



자료 : UNCTAD/ICC, *The financial crisis in Asi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8. 3.

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1995년에는 8.0%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멕시코 위기가 진정되면서 중남미는 경제안정을 되찾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외국인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1982년 외채누적에 따른 금융위기로 기업의 도산이 확산되면서 은행이 급속히 부실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4%로 하락하고, 198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여, IMF, 세계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칠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했는데, 이것이 금융위기 극복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칠레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주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저축·투자·경제성장 모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중남미 및 아시아의 금융위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흥

경제권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단기적(연도별)으로 볼 때는 변화의 폭이 큰 편이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는 그 자체로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대부분의 해당 국가들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접투자 감소요인을 상쇄시키거나 심지어는 직접투자가 증대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다. 영국

미국과 함께 경제모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영국은 현재 금융위기하에서 경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국가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비효율성, 국제수지의 구조적인 취약점, 파운드화의 가치폭락 등으로 1970년대에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던 영국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오늘날 경제모범국으로 재도약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IMF 금융지원을 받는 등 최근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IMF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IMF가 출범한 1947년 이래 1979년까지 IMF 총대출의 약 40%를 지원받았다.

영국정부는 1979년 이후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개혁, 빅뱅(big bang)이라 불리는 금융부문 개혁, 정부조직 혁신,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고용창출과 경제 활

9) 온기운外,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KIET 정책자료』, 1998. 1, p. 7.

성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는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함과 아울러 투자에 따른 각종 혜택도 제공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상공부(DTI) 산하에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영국투자청(IBB)을 신설하여 대외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으로 오늘날 영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으며, 1995년 한해 동안에만도 4만 8천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¹⁰⁾

우리는, 선진국인 영국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한때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렸으나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오늘날 경제모범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 김득갑, 「영국의 IMF 지원금융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月刊『삼성경제』, 1998. 2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가.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

전반적인 세계 경제활동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민영화 등 각국의 경쟁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함께 세계 각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에 힘입어 국제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었던 국제직접투자가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 및 유럽지역의 경기침체로 다소 둔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1995년부터 세계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투자자유화 등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체제 확대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한해 동안 이동한 세계전체의 국제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국경간 M&A와 투자자유화 조치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7.1% 증가하였으며, 이미 투자된 금액을 모두 합계한 잔액(stock) 기준으로는 지난 1980년의 4,800억 달러의 7배 이상인 무려 3조 5,41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국제직접투자는 1980년대에는 선진국간의 직접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선진국의 對개도국 직접투자가 급증하여 현재까지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투자 유출입 비중이 1990년대 들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 기준 개도국이 세계 직접투자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멕시코·대만 등 신

〈표 2-5〉 국제직접투자 추이(1985~1997)

(단위: 억 달러)

구 분	선진국		개도국		전세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85~90 ¹⁾	1,167(82.2)	1,450(93.2)	247(17.4)	106 (6.8)	1,419(100)	1,556(100)
1991	1,147(72.2)	1,898(95.8)	417(26.2)	83 (4.2)	1,589(100)	1,981(100)
1992	1,197(68.9)	1,797(89.2)	496(28.5)	217(10.8)	1,738(100)	2,015(100)
1993	1,388(63.6)	2,048(85.7)	730(33.5)	341(14.3)	2,181(100)	2,391(100)
1994	1,424(59.7)	2,097(83.5)	904(37.9)	407(16.2)	2,387(100)	2,511(100)
1995	2,059(65.1)	2,913(86.0)	963(30.4)	470(13.9)	3,165(100)	3,387(100)
1996	2,082(59.6)	2,947(87.0)	1,287(36.9)	515(14.9)	3,492(100)	3,468(100)
1997	2,328(58.2)	3,596(84.8)	1,488(37.2)	611(14.4)	4,000(100)	4,240(100)

주: ()은 비중(%), ¹⁾연평균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7년 및 1998년호.

홍시장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입 확대로 37.2%(1,488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 가운데 아시아 지역이 63%, 중남미 지역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이들 지역으로 직접투자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주요 지역·국가별 직접투자 유출입(1992~1996년 누적액 기준) 현황을 보면 <그림 2-3>과 같다. 지역별로는 EU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86년 'Single European Act' 채택 이후 EU 역내는 물론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별로는 미국(1위)과 영국(2위)이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1996년 기준), 독일·홍콩·프랑스·일본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6년 기준 세계 5대 해외직접투자국인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3,468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2,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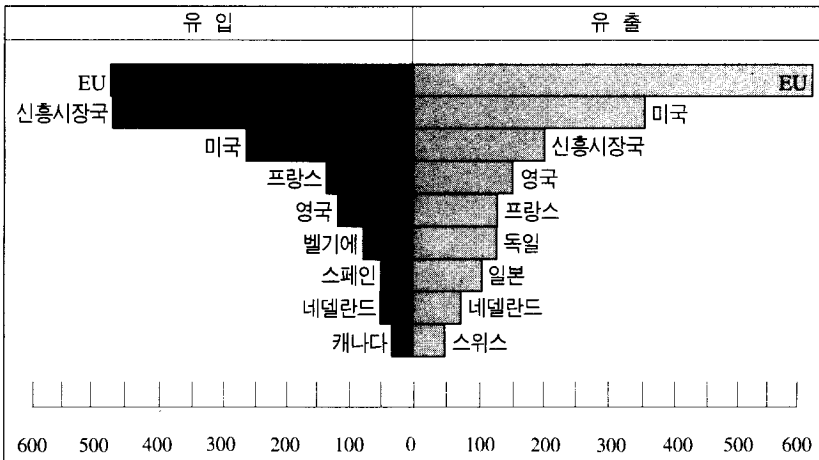
최근 국제직접투자 추이의 한가지 특징적 현상은, 미국이 경기호황

및 달러貨 강세 등에 따른 활발한 국경간 M&A로 1991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투자국이 됨과 동시에 1993년 이후 세계 최대투자유치국이 되었고,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중국이 세계 2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한 점이다. 1980년대 엔화 강세 등의 요인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경기침체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16위로 싱가포르(14위), 대만(18위) 등과 더불어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서 비교적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1996년 기준 직접투자 유입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대 직접투자 유치국 가운데에는 중국(2위)을 비롯하여 브라질(6위), 싱가포르(7위), 인도네시아(8위), 멕시코(9위), 말레이시아(15위), 아르헨티나(17위) 등 7개 개도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3> 주요 지역·국가별 직접투자 유출입 규모(1992~1996)

(단위: 10억 달러)



자료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68th Annual Report, 98, 6, 8.

나.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특징

1980년대 이후의 국제직접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에서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직접투자가 전세계 교역과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다국적기업 총매출액이 전세계 수출규모를 초과하는 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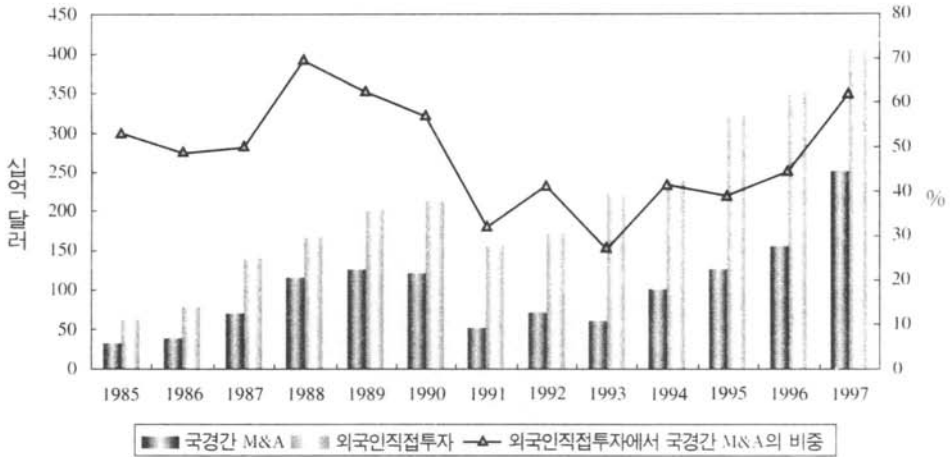
둘째, 직접투자에 있어 선진국 중심에서 점차 아시아 및 중남미 개도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셋째, 업종면에서 과거에는 1차산업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및 기술·자본집약적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자 및 정보부문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경간 M&A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경간 M&A는 기술습득, 유통망 확보, 상표인지도 이용, 생산네트워크의 활용 등이 기업인수 시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택되는 중요한 직접투자의 한 형태이다. 1980년대 말 붐을 이루었던 M&A를 통한 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1995년부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경간 M&A 총액은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증가한 2,360억 달러로 전세계 직접투자 유입의 약 60%를 차지하였다(<그림 2-4> 참조).

이와 같이 M&A는 세계 직접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세계 직접투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직접투자 흐름 가운데 국경간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국경간 M&A 추이(1992~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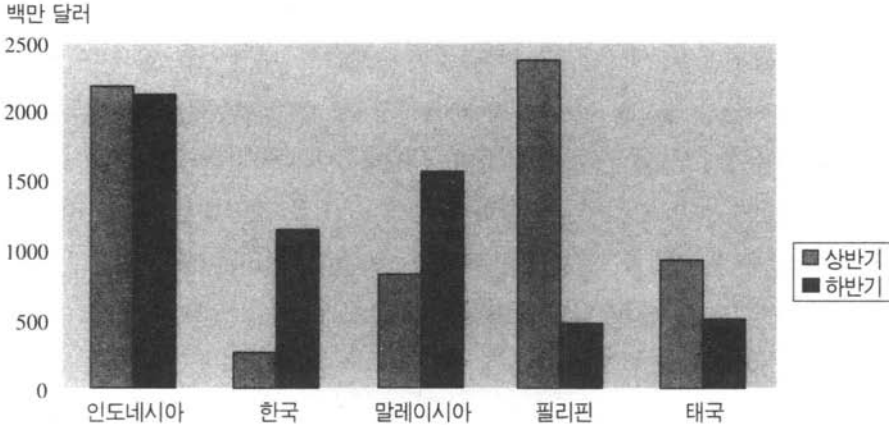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 Trends and Determinants*.

국경간 M&A를 지역별로 보면, 주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 전체 직접투자 유입액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기업인수를 용이하게 하는 대형 주식시장과 사업문화를 갖춘 국가에서는 다국적기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1997년 하반기 들어 국경간 M&A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아시아 5개국의 국경간 M&A를 통한 기업매각(1997년)



자료 : UNCTAD/ICC, *The financial crisis in Asi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8. 3.

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장기 전망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이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얼마나 외국 기업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투자유인을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 정치적 소요 등은 외국기업들의 관심을 감소시킬 것이지만,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광범위한 자유화정책,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 등은 분명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기업들이 대규모 부채상환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세계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국경간 M&A를 통한 對아시아 직접투자의 기회가 되고 있다. 다만, 1998년 9월 발생한 러시아 금융위기 등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에 있어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8년 2월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공동으로 전세계 다국적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회수율 40%, 응답업체 198개사)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은 외환·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계 기업들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서의 위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초 여건(economic fundamentals) 및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신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응답업체 가운데 대부분(88%)이 中·短期的으로 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현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지역·국가별로 보면, 아시아 개도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의 다국적기업들의 경우는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20~30%)이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비율(10%내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럽지역 다국적기업은 34%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유럽지역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여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주로 투자대상 지역의 국내시장을 겨냥해 진출하는 경향이 강한 서비스업의 경우는,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인 데 비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보다 높은 34%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기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아시아 지역은 직접투자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투자규모를 현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13%는 오히려 투자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직접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만이 투자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진출업종인 제조업의 경우는 2%만이 투자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응답해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세계 다국적기업이 호감을 갖는 투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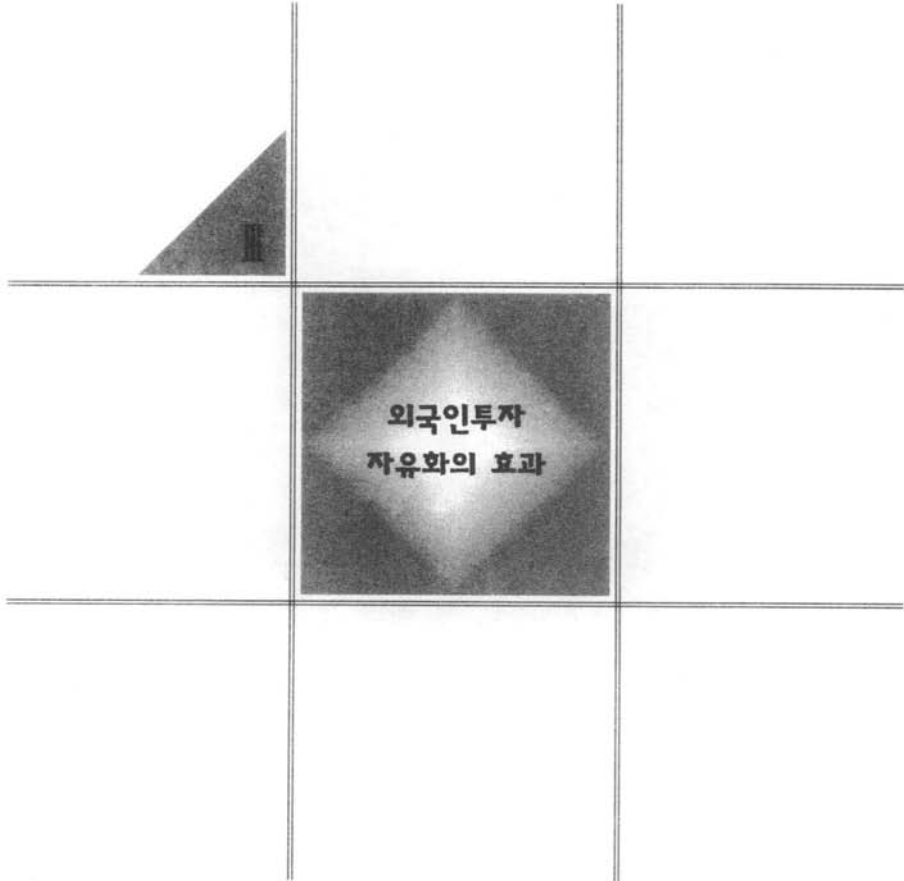
상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국들에게는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UNCTAD/ICC 공동 설문조사 결과

		中·短期(%)			長期(%)		
		축소	유지	확대	축소	유지	확대
전체		12	62	26	6	81	13
국별	유럽	11	55	34	5	86	9
	北美	11	70	19	13	84	3
	일본	13	68	19	0	56	44
	아시아 개도국	21	69	10	3	74	23
	기타	7	67	27	6	88	6
부분별	1차 산업	8	84	8	15	77	8
	제조업	9	57	34	2	83	15
	서비스	18	62	20	9	77	14

자료: UNCTAD/ICC, *The financial crisis in Asi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8. 3.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IMF 체제하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야말로 외환 및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므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순수한 금융적 성격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해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형태라 할 수 있다. 즉,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외국은행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국적기업들은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업체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철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내기업을 인수하려는 잠재적인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금융공황(bank run)의 위험에 대해 안정화요인(stabilizer)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기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을 지불할 다수의 매수세력이 있다면 기존의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공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방되어 잠재적인 외국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공황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¹¹⁾

현재 우리나라가 국내자본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M&A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의 인수·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M&A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자산가격의 폭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¹²⁾ 이는 외국인에 의한 매수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다소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투자한 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현지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모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이 평가되므로 자금조달면에서 별 어려움이 없고, 원자재의 조달이나 수출입금융에 있어서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발생 확률과 외국인직접투자

최근의 실증분석연구들은 총외채 비율, GDP 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수입액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동 모형의 추정치에 1996년도 설명변수들의 실제값을 적용하여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과 1995년에 경험한 멕시코에 대해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을 예측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1) Krugman, "Fire-Sale FDI," mimeograph, MIT, 1998, pp. 10

12) Krugman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모형과 금융공황(bank run) 모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외환위기하에서 자산가격의 폭락현상과 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mimeograph, MIT, 1998.)

<표>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1997년)

위기발생확률	한 국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외환위기	0.195	0.065	0.093	0.064	0.100	0.121
IMF구제금융	0.168	0.050	0.071	0.065	0.097	0.119
설명변수(1996년도)						
단기외채/총외채(%)	58.9	24.8	40.7	41	26.6	23.1
총외채/GNP	0.26	0.534	0.504	0.392	0.649	0.332
1인당 실질GDP 성장률(%)	5.9	6.1	5.2	5.3	5	-2.1
외환보유고 /수입액(months)	2.65	6.73	6.27	4.09	3.52	4.1
재정수지 /GDP(%)	-1.1	0	1.5	-0.5	-0.1	-1.7
순외국인직접투자 /총외채(%)	-1.36	3.24	1.26	11.13	1.99	4.15
국내신용증가율(%)	19.3	22.7	14.03	12	40.2	11.48
경상수지/GDP(%)	-4.7	-4	-8.5	-7.4	-4.4	-6.42

주: (1) 멕시코의 경우 위기발생 확률은 1994년, 설명변수는 1993년의 수치임.

(2) 순해외직접투자/총외채는 1995년 수치임. 기타 변수는 1996년 수치임.

자료: 박대근·이창용(1998), Kim and Hwang(1998)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1997년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은 20%에 가까운 것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1994년의 멕시코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고,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유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만일 다른 변수의 값이 불변인 상황에서 단기외채의 비중이 30% 수준이고 총외채 대비 순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비율이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10%대였다면, 한국의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은 6~7% 대로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외환위기의 발생 및 IMF 구제금융 요청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¹³⁾ 즉, 다른 경제상황이 같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많을수록 외환위기가 발생할 확률과 IMF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3) Frankel and Rose(1996), 박대근·이창용(1998), Kim and Hwang(1998)

2. 세수증대 효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수익성에 기초한 선진 경영기법을 사용하여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러한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에 의해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함에 따라 세수를 늘리게 된다.¹⁴⁾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한 이윤 중 상당 부분은 현지국에 재투자되어 추가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 한 예로 뉴질랜드 정부가 1995년에 189개 자국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한 총 부가가치의 90%가 재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14)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 주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세수를 늘리지 못하지만 감면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이윤창출에 대해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15) OECD, *Open Markets Matter: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998. p. 30.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갖는데, 크게 특화 및 경쟁촉진에 따라 후생을 증대시키는 이득과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에 따른 이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

우선 다국적기업은 직접투자를 통해 재화·서비스·기술 및 지식 등의 교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특화를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증대시키며, 경제내에 경쟁을 확대시킨다. 또한 국내 다른 기업에 첨단 기술을 전파하여 생산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OECD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이득으로서 선택의 자유의 확대, 비교우위에 기초한 특화와 교환의 증대, 상품 가격의 하락과 상품 종류의 다양화, 모방효과에 의한 생산성 제고, 지식 및 노하우 이전의 활성화, 그리고 자원 및 자본이용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들고 있다.¹⁷⁾

16) 외국인투자의 기술확산 및 외부경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연구보다는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기존의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으로는 Blomström, M. and A. Kokko. 1996.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st Countries :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45, Washington, D.C. : World Bank. 참조.

17) OECD, *Open Markets Matter :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998. pp. 24-25.

가. 특화촉진 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화 및 규모의 경제를 촉진시키는 한편 생산제품의 종류를 증가시켜,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효용 및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특히 서비스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의 종류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를 일으킴으로써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⁸⁾

나. 기술이전 효과

(1) 직·간접적 기술도입

외국의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기업이 외국의 기술보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술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형태가 있고, 두번째로는 선진기술이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에 체화되어 국내에 유입·확산되는 형태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기술도입이 모두 이루어진다. 우선 외국의 모기업(母企業)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기업내부 거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기술도입이 이루어진다.¹⁹⁾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

18) Rivera-Batiz, F.L. and L.A. Rivera-Batiz. 1994. "Europe 1992 and the Liberalization of Direct Investment Flows: Services versus Manufacturing."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ume 6, Number 1. pp. 45-57.

19) 현지법인의 기술도입선으로는 모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업도 상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제약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도입선의 다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Kim, J. D. 1997.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KIEP Working Paper 97-0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화에 체화된 기술을 도입하는 간접적인 기술도입 효과도 갖게 된다.

(2) 국내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파급 효과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도입된 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전파되는 기술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파급효과 또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는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직·간접적인 기술도입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⁰⁾ 이러한 외부효과는 외국기업이 현지시장, 소비자의 기호, 영업관습 등에 보다 익숙한 현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보다 우월한 기업특유(firm-specific)의 우위(advantage)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외국인투자의 기술파급 효과는 크게 후방연계 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전방연계 효과(forward linkage effect), 연구개발(R&D) 활동, 그리고 인력이동에 의한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방연계 효과는 국내 부품업체나 설비조달업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하청기업들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Lall(1980)은 인도의 트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후방연계 효과의 발생경로를 파악하였다.²¹⁾

첫째,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잠재적 공급자들이 생산시설을 세우는 것을 지원한다. 둘째,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부품 및 설비의 질을 향상시키

20) Blomström, M. and A. Kokko. 1996.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st Countries: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45, Washington, D.C.: World Bank.

21) Behrman and Wallender도 여러 현지국에서 활동하는 General Motors, IIT, Pfizer 등의 자회사들에서 유사한 경로를 발견하였다. (Behrman, J. and H. Wallender. 1976. *Transfer of Manufacturing Technology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Cambridge, Mass.: Ballinger.)

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공급자들이 원자재 및 부품을 구입하는 데 대해 지원을 한다. 넷째, 경영 및 조직관리상에 있어서 교육연수를 제공한다.

한편 전방연계 효과는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 형태로 다른 국내기업의 완제품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다시말해 국내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전방연계 효과는 특히 국내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의 고객으로서 공급자와 구매자라는 밀접한 관계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후방연계 효과보다도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²²⁾

구매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사례

전방연계 효과의 사례로서는 듀폰코리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듀폰코리아는 국내의 다른 기업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여 신상품을 개발할 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을 총동원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듀폰코리아는 현재 첨단소재인 엔지니어링 폴리머, 자동차 및 건물의 접합안전유리용 '뷰타사이트' 수지, 백색안료인 TiO₂, 그리고 자동차 보수용 도료인 '센타리'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22) Blomström, M. 1991. "Host Country Benefits of Foreign Investment." in D.G. McFetridge, ed., *Foreign Investment,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Toronto and London; Toronto University Press.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사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회사인 모토롤라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모토롤라 코리아는 국내 반도체업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1970년대부터 아남산업, 한국전자 등에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을 시도하였다.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기술자 양성교육, 제조기술의 전수 등을 통해 이들 기업들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반도체 제조전문업체로 성장하였으며, 그 기술자들이 성장하여 현재는 삼성반도체, LG반도체 등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포드사가 50%를 합작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한라공조도 전기전장, 사출, 절삭가공, 파이프 등 4개 업종 21개의 국내 협력업체에 대하여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개선 지도를 하고 있고, 6개 주력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품질, 조직, 생산, 자재관리 및 전산화 등에 있어서 경영혁신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대용산업 등 10개 국내업체에 경영진단을 통하여 경영개선점을 제시하고, 대정고분자산업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ISO9002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듀폰코리아 또한 하청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제품 생산에 따른 각종 자문 및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전과 환경보호의 실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한 예로서 완제품의 이동 혹은 보급은 생산공정의 연장이며 생산과 동일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운송시 사고예방 및 사고시 비상대책(Transportation Emergency Reporting Procedure)”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본사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듀폰코리아는 안전·환경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 기업에 전수하기 위해 SEMS(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Services)라는 ‘안전환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5년부터 서비스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첫번째로 한화중합화학의 여천과 울산의 3개 공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삼성전자의 안전 및 생산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 워크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1996년 5월부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산업안전분야 전반에 걸쳐 파트

너쉽을 갖고 상호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또한 현지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로 기술과 급 효과를 가진다. 실제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국적기업들이 현지기업들보다 직업훈련(on-the-job training), 세미나,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현지법인이 현지국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부터 고급 연구인력이 공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연구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이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현지의 연구인력은 연구개발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인력에 체화된 형태로 기술이 전파될 수 있다. 또한 현지국의 경쟁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자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되어 기술 및 경영기법을 익힌 경영자 및 기술인력이 다른 국내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이 창업함으로써 국내산업에 기술을 확산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들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하기도 한다.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현지기업의 경영자들 중 다수가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현지 자회사의 하청기업들은 상당수가 이 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것이다.²⁴⁾

23) Chen, E.K. 1983. Multinational Corporations, Technology and Employment. London; Macmillan.와 Gerschenberg, I. 1987. "The Training and Spread of Managerial Know-How. 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national and Other Firms in Kenya." World Development. Vol. 15, 931-939 참조.

24) Behrman and Wallender(1976), Wasow and Hill(1986), Katz(1987), Yoshihara(1988) 등 참조.

첨단 경영기법의 이전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선진 경영기법도 모회사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부품 제조회사가 국내에 설립한 로모코리아는 1988년부터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이라는 생산성 향상 운동을 최초로 실시하여 국내 상당수 기업에 파급시켰는데, 이는 생산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모든 분야의 업무개선을 통해 설비효율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운동이다. 이 회사는 또한 1996년 일본측 파트너가 개발한 신(新) 경영기법을 전수받았다. 이는 토요타 생산방식과 흡사한 것으로서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제조공정에 스피드를 첨가하여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여 고객만족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검사 및 포장도 생산지점에서 직접 시행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배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듀폰코리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고객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국내 우수기업의 경영진들이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본사의 안전과 환경정책, 마케팅 및 경영기법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1996년에 본사로부터 “Business Resource Planning”이라 불리는 Business Management Process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시장의 예측과 생산계획, 재고의 최소화 등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을 고객사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산업용가스 제조회사인 프렉스에어코리아 또한 첨단 경영기법의 국내 이전에 기여하였는데, 1996년 생산관리면에서 전력사용을 절약하고 생산공정의 안정을 도모하며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MPC(Model Predictive Control)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감사제도인 MSDS System, 차량방어 운전인 Smith System, 비상사태시 행동요령인 Linde Emergency Action Procedure(LEAP) Program 등을 도입하였고, 경영관리 기법에 있어서도 EVA(Economic Value Added)라는 새로운 경영분석 기법을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의 기업간 이동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간에 경영기법을 전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²⁵⁾

모토롤라 코리아의 창업지원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간재 생산을 위한 공장을 자체적으로 설립할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을 독립시켜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모토롤라코리아는 1968년에 질소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생산을 시작하였고, 그 제조기술을 국내 가스산업에 이전시켜 현재의 대성산소(주) 등에서 산업용 高純度 질소가 생산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전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금형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했던 당시의 실정을 파악하고 공장 내에 금형 제작공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많은 기술자들을 미국 본사에 연수시켰다. 그후 연수받은 기술자들이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사할 때에도 회사에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용하던 금형 제조기계들을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양도하고, 그들이 생산한 금형을 다시 구입하여 영업활동을 크게 장려하였다. 이렇게 탄생된 기업은 한미금형, 국제금형, 미크론정공, 크라운정공 등 약 10여 업체에 이르는데, 모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금형 전문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들이 생산한 금형은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각지의 반도체 생산회사로 수출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 효과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재나 그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Borensztein, de Gregorio and Lee는 외국인직

25) Caves, R.E. 199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접투자는 국내 자본축적을 늘리고, 기술을 이전하며 세계시장에 대한 진출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유치국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하고,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증가하면 투자유치국의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²⁶⁾

특히 투자유치국의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으로 대표되는 내부역량 또는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축적되어 있을 때, 즉 직접투자로 도입되는 선진기술을 그 나라의 경영자나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는 경제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다. 경쟁제고 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가격하락에 의해 소비자후생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 경우 가격하락의 폭이 클수록 후생증대 효과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는 잠재적 시장진입자의 암묵적 압력에 의해 국내 독과점구조를 방지하여 사실상 경쟁적 구조하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경쟁제고 효과는 또한 외부 경영감시기능을 통해 경영상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가진다. 외국기업의 진출은 그동안 형성되어 있던 현지시장의 균형상태에 영향을 주어 현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시장점유율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²⁷⁾ 이와 같이

26) Borensztein, E., Gregorio, J. D. and J. W. Lee. 1998.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 pp. 115-135.

27) Kenya의 신발제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현지기업의 생산기술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Jenkins, R. 1990. "Comparing

외국인투자는 현지시장에 경쟁을 유발하여, 현지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²⁸⁾

외국인투자는 또한 현지기업들로 하여금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경영방법, 마케팅, 서비스 등을 모방하도록 하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도 가진다. 실제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의한 전시효과가 1960년대 홍콩의 수출제조업 부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이상에서와 같이 외국인투자가 기술이전 등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⁰⁾

· 숙련고용자의 창업지원

Foreign Subsidiaries and Local Firms in LDCs: Theoretical Issues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26, 205-228.)

28) Chung, Mitchell and Yeung은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국인투자가 현지국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직접적인 기술도입보다는 외국기업의 진출로 인해 경쟁이 증대되는 데 기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Chung, W., Mitchell, W. and Bernard Yeung, 199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ost Country Productivity: The Case of the American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Discussion Paper No. 367. Institute of Public Policy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9) Riedel, J. 1975.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Export-Oriente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 Developing Country: A Case Study of Taiwa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1, 505-528.

30) 이러한 생산성 제고 경로는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사례연구에서 파악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대분류별 데이터를 계량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생산성 제고효과가 총체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를 대분류로 결합함으로써 인해 일부 개별기업에서 발견되는 생산성 제고효과가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im, J. D. and S. I. Hwang, 1998.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KIEP Working Paper 98-04,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62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 새로운 자본재의 도입 및 첨단기술의 이전
- 선진 경영 노하우의 전파
-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
- 경쟁제고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그리고 자본수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 효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투자대상국의 경제상황, 직접투자의 형태 및 구체적 생산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는 현지시장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의 변화 여부, 중간재의 현지조달 비중, 투자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특정 시장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생산은 해외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방법, 즉 본국으로부터의 수출,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 또는 라이선스에 의한 생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게 되며, 현지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현지에서 생산된 상품의 현지시장 점유율이 증가되면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부품 등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재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³¹⁾

31) Reuber et al(1973)이 1970년도 개도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현지법인들은 부품 및 설비 등 중간재의 1/3이상을 현지기업들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Reuber, G.L., with H. Crookell, M. Emerson, and G. Gallais-Hamonno. 1973.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한국암웨이의 제품 국산화 사례

세계적 네트워크 판매회사인 한국암웨이는 지난 '98년 4월부터 자사 제품과 한국산제품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원포원(one-for-one)」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국내 현지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산 암웨이 제품을 하나 내놓을 때마다 국내 우량제품 1개를 동시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암웨이는 국내시장 전체 매출의 17% 수준인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비중을 '98년말까지 25%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포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도 21개에서 '98년 9월초에는 32개로 늘어났고 판매제품의 종류도 90여개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수입대체효과와는 물론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암웨이는 또한 국산 주방용 수세미 '스크립 버즈'를 전세계 암웨이 유통망을 통해 연간 4백 50만 상자를 공급하며, VTR, 캠코더, 전자레인지, 의류, 신발 등 1백여 종을 북미지역에 수출하는 등 수출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한국산 인삼을 미국 현지공장에서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복합 영양제를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제3국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거점형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수출지향적인 다국적기업들은 디자인·포장 그리고 제품의 질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기호 등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

Development. Oxford ; Clarendon Press.) McAleese and McDonald(1978)도 1952-1974년의 기간동안 아일랜드의 제조업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간재의 현지구입 비중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McAleese, D. and D. McDonald. 1978. "Employment Growth and Development of Linkages in Foreign-Owned and Domestic Manufacturing Enterpris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0, 321-339.)

를 바탕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다른 국내기업에게 파급시킴으로써 다른 국내기업들의 수출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³²⁾ 즉,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들의 수출활동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주변에 위치한 다른 국내기업들에게 파급시킴으로써 외국시장 진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³³⁾

다국적기업이 제3국 시장에 대해 수입자유화를 위한 로비를 하게 되면 다른 국내기업들 역시 그 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³⁴⁾ 실제 최근 OECD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은 감소시킴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한편, 외국인투자는 기술도입에 따른 현지기업의 로열티 지급, 이익의 송금, 해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등에 의하여 무역외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자본유입의 증대로 인해 환율이 절상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가 과실송금 및 중간재의 해외조달, 환율절상 압력 등으로 인해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크

32) Blomström(1990), Keesing and Lall(1992) 참조.

33) Aitken, Hanson and Harrison(1994)이 1986-1990년의 기간동안 2000여개의 멕시코 제조업체의 수출실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출을 행하는 다국적기업 주변에 입지한 국내기업의 수출이 다른 국내기업에 비해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Aitken, B., Hanson G. D. and A. Harrison, 1994. "Spillover,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 Behavior." NBER Working Paper No. 4967, December.)

34) Blomström, M. and A. Kokko, 1996.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st Countries: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45, Washington, D.C.: World Bank.

35) "The links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empirical evidence for U.S. and French industries," STI Working Papers, OECD, 近刊.

게 나타나게 된다.³⁶⁾

첫째, 장기적으로는 중간재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수출비율도 증가할 것이다.

둘째, 해외 모기업으로 과실송금을 하는 기업이 있는 한편, 동시에 신규투자를 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어 과실송금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효과가 상쇄되게 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는 현지국에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을 이전하여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게 된다.

36) "Survey of OECD wor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DAFNE/DOC/IIN(98)1, OECD, May 1998, pp. 25-26.

5. 고용창출 효과

국제수지 효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국내 경제상황, 직접투자의 형태 및 구체적인 생산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현지국의 고용을 창출한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된다.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다시 전방 고용창출 효과와 후방 고용창출 효과로 나누어지는데, 前者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완제품의 유통·분배 등과 관련된 현지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하며, 後者は 외국인투자기업에 중간재, 원자재 등 부품을 공급하는 현지국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는 신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투자대상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³⁷⁾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지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노동집약적인 생산거점형 투자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접근형의 자본집약적 투

37) Alter, R.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Employment Overview on Analytical and Economic Policy Issu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Employment*, OECD.

자보다 노동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생산품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라면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³⁸⁾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는 투자유치국의 노동수요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즉,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³⁹⁾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국내기업보다 기술수준 및 자본장비율이 높으므로 고용창출 능력은 국내기업보다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1983~1986년의 4년간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기업은 투자액이 늘더라도 고용창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국내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38) United Auto Worker, *Research Bulletin*, June 1996.

39) Glickman and Woodward(1989)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신규투자보다는 인수합병 방식의 진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1982~1986년 동안 미국의 경우 고용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인수합병을 통해 잠재적인 실업자가 구제된 효과를 감안한다면 외국인투자로 인해 고용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Aho and Levinson(1988)과 Little(1988) 등은 특히 경기하락 시기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없었더라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0) Cowling, K. and R. Sugden, 1987.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ism*. London: Wheatsheaf Books.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고용창출 효과

1970년 6개의 가공업체로 출발한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1995년 말 기준 73개 사가 입주해 있고, 외국인투자비율은 1970년대의 90%에서 1995년 말에는 77%로 다소 감소하였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1971년 1,248명에서 1976년에는 3만여 명, 1987년에는 37,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후 노사분규와 공장자동화의 영향으로 입주기업체의 고용은 1995년 말 15,000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마산 수출자유지역 밖의 공장에 위탁가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창출된 고용까지 포함할 경우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1976년에 총 5만 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당시 경남 전체 제조업 고용의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마산 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7. 『마산 수출자유지역 25년사』, p. 334).

6. 외국인투자와 환경보호

흔히들 다국적기업이 특히 개도국에 공해산업을 진출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가 환경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OEC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 환경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이러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들은 환경보호 수준이 낮은 지역보다 오히려 환경기준이 엄격한 지역을 투자적격지로 선정한다. 이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환경기준이 다른 주에 비해 까다로운 오레곤 주가 기업들의 입지 선호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이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환경기준보다도 엄격한 수준의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갖고 있고, 최신의 환경친화적 기계설비를 포함한 환경관리체제를 통하여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고 있다.⁴²⁾

셋째, 다국적기업의 경우 만일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국내

41) OECD, *Open Markets Matter: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pp. 64-74.

42) 또한 OECD의 부패방지 규정에 의해 다국적기업의 경우 환경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본국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기업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즉, 다국적기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보호단체에 의해 범세계적인 불매운동을 당하게 되므로 환경보호 문제에 국내기업보다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실제 다국적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고, 그 중 중요한 요소가 환경보호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들은 최신의 환경친화적 기술과 정보, 경영 노하우, 기술훈련 등을 다른 국내기업에게 전파시킴으로써 국내 환경보호에 기여하기도 한다.

유한킴벌리의 환경보호 활동

유한킴벌리는 지난 1984년부터 국내기업 최초의 환경보호 활동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으로 30여 억 원의 산림자원조성 기금을 운영하여 전국 국유림에 현재까지 1,71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과 33킬로미터의 산길 개설·보수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임업인의 연수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나무심기'와 '그린캠프' 등을 통해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 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환경단체 등에 보급함으로써 환경교육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한킴벌리는 일찍이 자발적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하여 가장 오랫동안 실행해옴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환경보호운동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가. 볼보의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사업 인수

(1) 인수 동기

1974년에 설립된 삼성중공업은 1998년 6월에 중장비 사업부문을 스웨덴 볼보(Volvo)사에 매각하고 지게차사업 부문은 미국 클라크(Clerk)사에 매각하였다. 삼성중공업은 적자사업 부문을 매각·정리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부채상환에 충당할 계획으로 중장비부문을 볼보그룹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이번 매각대금으로 삼성중공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27년 스웨덴에서 자동차생산으로 출발한 볼보는 전세계 20여개 국가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100여개국에서 수송관련 사업 분야에서 마케팅 및 엔지니어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최대 규모의 다국적기업이다. 지금까지 볼보의 주요 시장은 유럽과 북미지역이었지만, 점차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볼보 건설장비그룹은 아시아에 생산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아시아 건설장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판매망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번 인수를 계기로 볼보 건설장비그룹은 굴삭기 외에 휠로더, 그레이더 및 아티큘레이티드홀러 등과 같은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함

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2) 불보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현재 생산감축에 따른 과다고용 문제가 있으나, 향후 불보의 경영전략이 삼성중공업의 인수를 통한 아시아 지역 생산교두보의 확보라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불보는 삼성중공업에서 굴삭기 부문 사원 2,080명중에서 1,658명을 인수함으로써 미국 클라크사로 이동한 인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인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불보는 인적자원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높이

불보의 경영체제 개선

- 합리적 업무체계의 정립 : 우리나라 기업의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사장도 조직의 평범한 일원으로 손수 복사를 하고 말단 직원과 토론을 하는 등 모든 사원과 협의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결재방식도 이전에는 실무진이 가장 유력한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면 되었지만, 불보인수 후에는 사장과 임직원이 격렬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투명성의 제고 : 불보인수 이후에는 회사 기밀이 아닌 한 정확한 회사의 실상을 공개하는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 글로벌 자율경영 체제의 변신 : 전세계 15개국에 걸쳐 있는 불보 건설기계 사업장을 연결하여 구매-판매-애프터 서비스 조직을 글로벌 체제로 구축하였다. 이 결과 기존 수직적인 결재조직은 없어졌고, 구매는 구매끼리, 개발은 개발끼리, 영업은 영업끼리 연결되었다. 즉, 이전에는 그룹의 결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던 것에서 불보의 인수이후에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는 주요 요소로 간주하고 기업전략을 세우고 있다.

불보의 뛰어난 재무구조, 투자여력 등은 국내시장점유율 상승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바, 특히 창원공장의 R&D투자는 국내산업의 발전 및 국내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로 실직 위협에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향후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불보는 앞으로 품질향상을 위해 2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실현되면 추가적인 외화획득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월마트의 한국마크로 인수

(1) 인수 동기

회원제 도소매형 창고할인매장인 한국마크로는 네덜란드의 SHV홀딩사와 한국마크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6년 1월 인천에 1호점을 개장한 이래 경기도 용인, 일산 그리고 대전 등 4개의 지점을 개점하였다.

반면,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1962년 창업주 샘 월튼(Sam Walton)이 미국 아칸소주의 로저스에서 월마트(Wal-Mart)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시작한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로 성장하였다. 또한 1993년에는 월마트 인터내셔널을 설립, 국제부문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4개 대륙에 진출해 미국·캐나다·멕시코·아르헨티나·브라질·독일·푸에르토리코 등 7개국에서 3,42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89년에 국내 유통시장에 대한 대외 개방 일정이 예시된 이후 1996년 1월부터 전면 개방되어 외국 유통업체

들이 매장면적과 점포수에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1996년 이후 꾸준히 국내진출을 모색하다가 1998년 7월 10일 한국마크로를 총 1억 8,10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로써 월마트는 중국에 진출한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한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2) 월마트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월마트와 같은 고도의 유통경영 기술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은 국내 유통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유통업체로 하여금 선진 유통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영세업체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 유통산업 전반의 체질개선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다양화로 인한 선택범위 확대,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격하락 등 소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월마트와 같은 외국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면, 이는 곧 외국 제조업체의 국내진출을 위한 경로가 된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외제상품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 제조업체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외국 제조업체의 상품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듯이 외국 유통업체의 국제적인 유통망을 통해 우리 상품의 판매기회도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회원제 창고대형판매점, 하이퍼마켓, 할인점 등 새로운 형태의 업체들이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가격과파를 통한 국내 유통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월마트와 같은 자본력과 경영기술에서 월등히 앞선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국내의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 유통업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경영실적이 매우 악화되거나 도산할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설립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거나, 재교육 등을 통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

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외국의 금융기관 해외매각 사례 : 태국과 아르헨티나

1997년 10월 16일 태국정부는 태국 금융부문의 대외신용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하여 은행과 파이낸스社의 법정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금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확대를 허용키로 하였다. 특히 파이낸스社의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기존에 5년 동안 25%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을 10년 동안 100% 지분으로 조정키로 하였다. 또한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기존 49%에서 51%로 확대하여 외국인 최대주주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태국정부는 이후 1998년 8월 14일 15개 시중은행과 35개 파이낸스社를 지난 1년간 증자실적과 건실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5개 범주로 분류, 은행권 잔류, 합병, 해외매각 조치한다는 금융개혁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 4개 국유화 은행 중 삼 시티 뱅크(Siam City Bank)와 방콕 메트로폴리탄 뱅크(Bangkok Metropolitan Bank)는 해외매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히 추진, 외국인들이 태국은행들을 M&A 하기 쉽도록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지분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4개나 생겨났다. 이와 같은 신속한 해외매각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 성공적인 금융개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프랑세스은행(Franc s del Rio de la Plata)이 1995년 이후 스페인의 빌바오(Bilbio Vizcaya)은행에 지분 32.6%를 3억 7,000만 달러, 크레디토 아르헨티노(Credito Argentino)은행이 스페인의 빌바오(Bilbio Vizcaya)은행에 지분 100%를 6억 5,000만 달러, 비젤(Bisel)은행이 칠레의 크레디토 아그리콜(Credito Agricole)은행에 지분 30%를 3,300만 달러, 킬레메스(Quilmes)은행이 스코틀랜드의 노바 스코티아(Nova Scotia)은행에 지분 69.9%를 1억 8,000만 달러에 매각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은행지분을 해외로 매각함으로써 유입된 외국자본은 물가 안정, 이자율 인하, 국가신용도 개선 등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1993년 민영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2년 여의 기간 동안 추진되어 왔으나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와 자본시장의 제약으로 인하여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98년 7월과 8월에 다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민영화 방안이 이전 민영화 방안과 다른 점은 대규모 외국 장기투자자본 유치와 외환확보를 위해 해외매각이 주된 방식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가. 공기업 해외매각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

국내기업들의 투자능력이 저조한 이때에 한국전력, 포철, 한국통신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을 민영화함에 있어 외국자본의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국적 유지, 민영화 이후 공공성 유지 등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많은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통해 경제회복에 필연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도 함께 도입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도 개도국 민영화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표 3-1> 참조). 특히 1988~1995년간 전세계 민영화

수입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하였으며, 이 중 약 4/5가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다.⁴³⁾ <표 3-1>은 전세계 주요지역의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특히 헝가리)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남미(특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통신부문 등 인프라산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국내기업에게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커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세계은행의 민영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하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주요 신흥경제국에서는 통신부문 민영화 주식의 3/4을 외국인투자자가 인수하였다.

공기업 해외매각은 일시적인 외화유입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기업들이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를 단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효과를 갖는다. 때로는 후속투자가 이행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후속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으나 IFC 보고서에 따르면 1988~1994년 동안 전세계 민영화 총 3,041건 중 후속투자에 대한 자료가 있는 412개의 기업에 한하여 볼 때 민영화 당시 매입기업들이 밝힌 투자계획금액(committed investment amount)은 190억 달러로 공기업 매각대금인 60억 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후속투자를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페루의 경우 1991~1995년 기간 동안 민영화 매각대금은 44억 달러였으며 계획된 후속투자 금액 또한 약 46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정부의 개방화 의지를 외국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전신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공기업 해외매각분 외에 추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43) Bouton, L. and M. Sumlinski. 1997. "Trends in Privat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FC Discussion Paper No. 31.

〈표 3-1〉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현황 (1988~1995)

지 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비중(%)
유럽 및 중앙아시아	40.2
중남미 및 카리브	20.9
사하라남부 아프리카	19.7
남아시아	13.7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5.3
중동 및 북아프리카	4.2

자료: Bouton, L. and Sumlinski, M. 1997. "Trends in Privat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FC Discussion Paper No. 31.

다. 세계은행 그룹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영화를 통한 1달러의 외국인투자는 민영화와 관계 없는 외국인투자를 0.88달러 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는 인수 희망자 숫자를 높여 공개입찰시 경쟁을 촉진한다. 멕시코의 346개 민영화 건수를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개 기업이 더 참여함으로써 매각가격이 15~20% 정도 증가하였다.⁴⁵⁾

44) Sader, F. 1995.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and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1988 ~ 1993," FIAS Occasional Paper 5, World Bank, Washington

45) Ilanes. 1997. "Determinants of Privatization Pric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XII (4): 965-1025.

나.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사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은 민영화를 통하여 전반적인 외국인투자를 촉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모두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극복 방안의 하나로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민영화조치가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표 3-2>와 <표 3-3>은 이들 국가에서 민영화를 통하여 유입된 외국인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 3-2>에서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영화 관련 통계치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1988~1995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민영화를 통하여 183억 달러 이상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이 중 거의 반인 47.5%가 외국인투자였다. 멕시코의 경우 매각수입(약 273억 달러)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은 아르헨티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9.15%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민영화를 통한 총 투자액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8~9배 정도에 달한다.

<표 3-3>을 보면 1990~1993년 사이에 아르헨티나로 유입된 총 외국인투자 중 80% 이상이 민영화를 통하여 투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91년 이후 공기업 민영화로 유입된 외국인투자(주로 국내자

<표 3-2> 국가별 민영화관련 통계(1988~1995)

(US\$ 백만)			
국 가	공기업 매각금액	민영화 건수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아르헨티나	18,355	131	8,720 (47.5%) ¹⁾
멕시코	27,331	211	2,502 (9.15%)
한 국	3,274	8	300 (9.16%)

주 : 1) 매각금액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

자료 : Bouton, L. & Sumlinski, M. 1997. "Trends in Privat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FC Discussion Paper No. 31.

<표 3-3> 유입형태별 외국인투자: 아르헨티나, 멕시코

(US\$ 백만)

국가 / 유입형태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¹⁾
아르헨티나						
총 외국인투자	1,147	1,028	1,836	2,439	4,179	6,239
직접투자(flow)	807	674	273	465	518	628
부채출자전환 ²⁾	340	159	32	-	-	-
민영화	-	-	1,531	1,974	3,661	5,611
멕시코						
총 외국인투자	2,594	3,037	2,632	4,762	5,366	6,900
직접투자(flow)	1,671	2,648	2,432	3,956	5,275	
부채출자전환 ²⁾	868	389	85	19	-	..
민영화	55	-	115	787	91	..

주: ¹⁾ 추정치²⁾ 부채출자 전환 항목은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만을 포함. 반면 민영화 항목은 부채교환을 통하여 투자된 액수를 포함하고 있음.자료: Agosin ed.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p. 7.

본과 합작) 그리고 이윤의 재투자는 총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⁴⁶⁾

(1)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아르헨티나의 경우 1988년에 약 300여개의 공기업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기업들의 총부채를 합한 금액은 GDP의 3.4%(1989년 기준)에 달하였다. 민영화는 124억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부채출자 전환을 통하여 외채를 154억 달러나 줄이는 등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아르헨티나는 정부가 처음부터 뚜렷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영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1980년대 아르헨티나의 공공부문

46) Agosin ed.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은 재정적자로 인해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저하되어 민영화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화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특히 인플레이 억제정책의 일환으로)으로 제시되었으며 매넴정부는 수익성 없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안정을 도모하였다. 민영화는 재정상 수입 이외에도 공기업에 지불하던 각종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비교적 높고 주식시장이 발달하여 공개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법에 큰 문제가 없었고, 이는 매각 금액을 극대화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데도 일조하였다. 또한 민영화는 기술혁신, 외국인투자 유치,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5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투자액(민영화 당시 그리고 후속투자 계획 포함)의 약 60% 정도는 국내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조달에 쓰도록 되어 있어 기계, 수송수단, 그리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수요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이행조건을 부여하였는데(투자액수, 기술이전, 서비스의 수준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신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체계를 보장하여 주는 대신 서비스의 질, 후속투자액수, 기술이전 등에 대한 이행조건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였다. 그 결과 민영화 이후 통신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민영화된 통신회사 ENTEL의 매각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1993년에는 최고 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5년에 이르러서는 투자액수나 서비스의 질 향상 정도가 계약조건에 명시된 목표를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7) Agosin ed.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 멕시코의 민영화

멕시코에는 1983년 1,115개의 공기업이 있었으나 1994년에는 215개를 제외한 석유, 전기 등 대규모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정부지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3년 42%에 달하던 것이 1994년에는 26%로 감소되었다.

멕시코가 통신부문(Telmex)의 민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 1991년 주식시장 투입자본(stock exchange's market capitalization)의 46%, 1992년에는 17%, 1993년에는 15%에 달하였다.⁴⁸⁾ 이러한 통신부문의 민영화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단계로 1990년말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경영권을 넘겼다. Telmex 민영화를 위한 국제 공개입찰(총 주식의 51% 매각)에는 16개의 통신회사들이 참여하였고, 입찰결과 Carso Group(멕시코: 10.4%), Southern Bell(미국: 5%), France Cable et Radio(프랑스통신의 자회사: 5%)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17억 6천만 달러에 매각되었다.⁴⁹⁾

두번째 단계로 1991년 5월 22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주로 국제 주식시장(미국 55%, 영국 14%)에서 주식예탁증서(DR)의 형태로 매각하였다. 멕시코에서 소화된 물량은 7%에 지나지 않았는데, 4.4%를 통신노동자조합에서 인수하였고 남아있는 정부지분은 9%였다. 이때 Telmex 주식은 뉴욕 주식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된 종목이었으며, 주가는 멕시코에서의 주가를 앞질렀고 1년내에 처음 상장가의 2배로 거래되었다. 이어 Telmex는 1992년 5월에 14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 결과 정부지분은 5%로 줄어들게 되었다. 민영화 이후 예상보다 좋은 기업성과를 기반으로 멕시코와 미국 등지에 발행된 물량은 쉽게 소화되었으나 타지역에서의 수요는 미미하여 할당되었던 ADS(American Depository

48) 멕시코 정부는 Telmex의 민영화로 약 5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49) 실제로 매각된 주식은 총 주식의 20.4%이지만 AA급의 특별주가 포함되어, 5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4〉 멕시코 Telmex의 민영화(1990~1993)

발행일자	백만주	자본(capital stock)		금액 (백만 달러)	인수자
		지분(%)	주식종류 ¹⁾		
1990년 12월	187	4.40	A	325	임직원
1990년 12월	2,163	2.40	AA	1,758	전략적 인수자
1991년 5~6월	1,745	16.45	L	2,271	내외국인 투자자
1991년 9~10월	541	5.10	L	477	전략적 인수자
1992년 12월	500	4.70	L	1,360	내외국인 투자자
1993년 11~12월	329	3.10	L	903	내외국인 투자자

주: ¹⁾ AA=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

L=의결권이 가장 제한되어 있는 주식. A=중간 정도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

자료: Leiberman & Kirkness ed (1998) *Privatization and Emerging Equity Markets*, World Bank and Flemings.

Shares) 950만 주를 865만 주 규모로 축소하여야 했다. 주가는 ADS 1주당(1 ADS=20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L주식) 56.124달러였다. 1994~1995년에는 폐소화 위기의 여파로 Telmex의 ADS가격이 60%나 하락하였지만,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1997년 중반에는 ADS 1주당 48달러에 거래되었다.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8%(1997년 기준) 정도로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다지 크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공기업은 상위 6개 정도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통하여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나 경제전체에 주는 영향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통신의 매각을 통한 외자유입액을 1998~1999년 동안 34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⁵⁰⁾ 이는

50) 산업연구원. "공기업 대외매각 가능성 검토." 「KIET 정책자문자료집 (I)」. 정책자문자료 98-04-28. 1998. 4. p. 7.

멕시코가 Telmex를 민영화할 때 유입한 50억 달러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기업외채, 국내부채 등이 공기업보다는 주로 민간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부채출자 전환을 통해 외채를 축소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나아가서 정부지분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매각할 계획이어서 직접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커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고하게 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조치로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실질적으로도 외국인투자는 민영화된 부분에 대한 후속투자 유인, 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발, 기술이전, 국내수요 창출 등 경제회복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단순히 민영화의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의 새로운 활력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단계 민영화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경영자에게 경영권이 이양된다면 매각 당시의 가격이 다소 낮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음 단계에 매각될 나머지 지분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익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는 매각금액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후속투자 효과를 얻기 위하여 후속투자,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이행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급속히 철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유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거의 엄격한 간섭위주의 정책에서 자유화의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한해 동안 76개국에서 총 135건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자유화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991년의 경우만 해도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를 단행한 국가가 35개국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자유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도 1997년에만 108건이 체결되어 1997년 말 현재 총 1,794건에 달하고 있고, 각 국 정부가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체

<표 4-1> 국제직접투자 관련 자유화조치

항 목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직접투자제도 변경 국가 수	35	48	57	49	64	65	76
직접투자제도 변경 건수	82	79	102	110	112	114	151
자유화조치 건수	80	79	101	106	106	95	135
규제 건수	2	0	1	2	8	16	16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결한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 건수도 1990년대 초반 400건 미만에서 1997년 말 현재 1,513건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도 국제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계적인 민영화 추세도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1996년에는 세계 총직접투자 가운데 25%에 달하는 약 880억 달러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민영화를 통한 직접투자유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가.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선진국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몇몇 업종이나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표 4-2> 참조). 예컨대, 금융서비스·방송·통신·항공·해운·철도 부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보험·어업·광업·석유 및 천연가스, 공익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일부 국가가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원인은 국가마다, 그리고 부문에 따라 다를 것이나, <표 4-2>에 따르면 몇몇 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현실적인 요인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의 유지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국인투자 장벽의 하나로,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국가가 나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를 개별국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 놓는 경우 남용의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제규범들은 이를 제약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즉, 국가

〈표 4-2〉 G7 국가의 외국인투자 규제내용(주요 업종별)

업종 / 부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금융서비스	LR*	LR	LR	LR	LR	R	R*
보험	LR*	LR		LR	L	R	R*
방송	L	L	L	C	L	L	L
통신	L	L	L	C	L	L	L
항공운송	L	L	LR	L	L	L	L
해운	L	L	L	L	L	L	L
육로운송	C	R	C	C			
철도운송	C	C	C	C	L	C	C
광업	L*	L		R	C	L	L
석유·가스	L*	L		R	C	L	L
출판	L*	LR					
영상·음반	L*	R					
공익사업 ¹⁾	L*	L		C	L	C	L*
부동산	L*						R*
관광		R		R		L	
어업	L*	L*		L	L	L	L
도박		L	C	C			

주 : L=제한(Limited), C=금지(Closed), R=상호주의(Reciprocity : 상대국의 제한여부에 상응하여 제한을 하는 것)

*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조치

¹⁾ 에너지, 수도, 가스, 전기

자료 : OECD 회원국의 자본이동 자유화에 대한 유보안

안보나 공공질서의 정의를 어느 정도 구체화한다든지, 이를 사유로 한 규제의 발동에 있어 국가간의 협의 절차를 규정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근 OECD에서 추진하였던 다자간투자협정의 경우,⁵¹⁾ 국가안보를

51) OECD는 강력한 국제투자규범을 마련하고자 1995년 9월부터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MAI)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10월 프랑스가 협상불참을 공식선언함에 따라 1998년 12월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협상국들은 MAI 협상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OECD의

이유로 한 조치로서는 전시, 무력충돌, 여타 국제관계상의 긴급사태에서 취하는 조치, 대량살상 무기의 비확산과 관련된 국가정책 또는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 무기 및 탄약류의 생산과 관련된 조치들로 한정하고 있다. 공공질서의 경우는 국가안보에 비해 더욱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는 공공질서를 위한 조치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 역시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 조치는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국제협정들, 예컨대, OECD의 투자관련규범(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내국민대우 규범), GATS 등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협정의 위반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한 차별적 조치는 협정의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조치들은 국제규범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규제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은 국방·해양운송·통신 등의 분야에서 내국민대우를 제한하는 조치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산업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확장 또는 활동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Exon-Florio 법)을 운용하고 있다.

<표 4-3>은 OECD 회원국 중 특히 G7 국가들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사유로 내국민대우를 제한하고 있는 분야를 보여 준다.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 차원에서 MAI 협상의 진전을 저해한 주요 정치적 문제들, 예컨대, 환경 및 노동문제, 국가주권의 문제, 투자자의 의무 문제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4-3〉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사유로 한 내국민대우 제한분야(G7 국가)

	분 야
미 국	전분야, 자원, 항공운송, 해양운송, 통신, 방송
일 본	전분야, 통신, 방송, 비철금속
프랑스	전국방,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독 일	없음
캐나다	통신
영 국	국방, 해양운송, 항공우주
이태리	없음

자료 : OECD, 1997. National Treatment for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2) 문화의 정체성 유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정체성’ 역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이를 사유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두고 있다.

문화의 정체성을 사유로 많은 규제조치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캐나다와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 문화산업을 ① 서적·잡지·신문의 출판·유통·판매 ② 영화 및 비디오의 제작·유통·판매·전시 ③ 영상 음반의 제작·판매·유통·전시 ④ 라디오, TV, 케이블 방송, 인공위성 방송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GATT에서 시청각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가 대체로 문화관련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에는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영화상영, 라디오 및 TV 방송, 음성녹음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목적의 조치와 달리 문화의 정체성을 사유로 한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문화의 정체성을 목적으로 한 차별조치는 내국민대우 등과 같은 국제협정상의 의무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미 투자협정에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스크린쿼터 제도⁵²⁾도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행의무이다. 특히 양자간투자협정은 다자간투자협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정책이 결코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외국투자자에게 확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문제로 인해 한·미 투자협정이 결렬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일정수준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⁵³⁾

(3) 공공 분야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분야들로서 전기·우편·수도사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통신·철도운송·항공운송·해운·석유 에너지 등도 공공 분야로 분류된다.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분야의 경우 공기업에 의해 독점되거나, 정부에 의해 사업권이 부여된 특정 업체에 의해 사업이 영위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공독점 분야의 경우 비단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신규투자 또한 똑같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특정업체에 대해 사업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명시적인 차별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저해하는 시장접근 장벽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독점사업

52) 스크린쿼터제도란 국내 영화관에서 일년 중 일정일수(현행 146일)에 상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산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일종의 이행의무 제도이다.

53)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관호, 1998.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자료논문 98-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으로 영위되었던 사업들이 민영화되고 경쟁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통신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 독점 사업을 민영화하면서 곧바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완벽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외국인의 허용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외국인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통제를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예로서 영국이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을 민영화하면서 도입한 黃金株(golden share) 방식을 들 수 있다.⁵⁴⁾

나. 개도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의 유지, 문화의 정체성 유지, 공공성의 유지 등은 개도국에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요한 규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경제개발이라는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제3세계에서 풍미했던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노동의 착취라는 정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반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 수단으로서 외국인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개도국의 정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되 자국의 경제·사회 목표에 부응하는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려는 규제정책으로 반영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허용은 개도국이 취하는 대표적인 규제

54) 황금주(golden share)는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 주식으로 정부의 대표자만이 특별주주로서 보유가 가능하다. 정부임명 임원에 관한 규정의 변경, 임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절차의 변경, 의결권이 보통주식의 경우와 다른 주식의 발행 등의 중요 결정에는 특별주주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업종, 외국인직접투자를 환영하지는 않으나 허용하는 업종,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업종, 외국인직접투자를 금지하는 업종 등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상이한 정부규제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수출이나 국내부품 사용 등과 같은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규제 역시 개도국의 보편적인 규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의 배경에는 정부가 국내기업과 유착관계를 갖고 특정 국내기업이 독점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가. 외국환거래 자유화

1998년 6월 정부는 2단계의 외환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1999년 4월 1일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 관련 외환규제가 철폐되고, 2단계로 2000년 말까지 개인의 자본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외환규제가 철폐된다.

이와 같은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은 법령체계를 선진화한 것으로서 이전의 '원칙금지, 예외허용' 체계의 외국환관리법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외국환거래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방안은 총량 위주의 사전규제 체제에서 외국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 체제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정부는 1998년 7월 외국인투자촉진법(外國人投資促進法)을 제정하여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 법체계를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첨단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급을 도입하는 등 투자유인제도를 확충하였다.

다.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자유화

정부는 1998년 7월부터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없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토지취득 절차도 신고제로 전환되어 외국인은 계약 체결 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거래 내용을 신고만 하면 되게 되었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국내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3~5년내 처분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외국기업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라.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

1998년 5월에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敵對的) M&A가 전면 허용되었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주식 33.3% 이상 취득시 해당기업 이사회 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이사회의 동의 없이도 주식의 전량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⁵⁵⁾

55)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우호적(友好的) M&A는 1997년 12월 말부터 허용된 바 있다.

마. 주식·채권시장의 개방 확대

외자유입 확대를 위해 주식·채권시장의 개방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1998년 5월 외국인주식투자의 한도가 철폐되었고, 이미 그 이전에 3년 이상 현금차관 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으며(1997. 12. 16), 모든 장단기 국공채·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폐지되었다(1997. 12. 30).

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개방 확대

정부는 1998년 4월과 5월 두번에 걸쳐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① 전면개방(18개 업종)

상품교환업, 투자회사, 주유소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기타 해상운송업, 기타 여신금융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신용조사업, 원유정제처리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증권거래업, 골프장운영업, 곡물도정업.

* 수도사업은 개별법에 의해 공공독점(지자체, 수자원공사) 유지함.

② 부분개방(3개 업종)

담배제품제조업*, 도박장운영업(카지노, 1999. 5. 1), 선물거래업.

* 담배제품 제조업은 독점(담배인삼공사) 유지, 향후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시 25%(1인당 7%) 이내에서 지분참여 가능함.

③ 개방범위 확대(9개 업종)

발전업, 신탁회사, 신문발행업(1999. 1. 1), 정기간행물발행업(1999. 1. 1), 유선전신전화업(1999. 1. 1), 무선전신전화업(1999. 1. 1), 기타 전기통신업(1999. 1. 1), 투자조합, 유선방송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추가로 개방됨에 따라 총 1,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종전 42개 업종(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에서 31개 업종(미개방 13개 업종, 부분개방 18개 업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12월 현재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남아있는 분야를 살펴보면(<표 4-4> 참조) 운송과 방송·통신분야에 가장 많은 제한조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차산업의 일부 업종에도 제한조치가 남아있다.⁵⁶⁾ 과거에 가장 많은 제한을 받았던 금융서비스 업종의 경우 거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은 제한조치가 남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현황 및 그 배경을 업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송업

운송업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업이나 외항화물운송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해 왔으나, 외항화물운송업의 경우 1998년 말에 전면 개방할 예정으로 있다. 예선업이나 내항여객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권 및 안보 차원에서 국내항해권(cabotage)의 개념을 적용하여

56) <표 4-4>에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업종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1개 업종에 달하는 방위산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제외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도 영리학원을 제외한 각급학교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는 분야

부 문	업 종	제한내용	개방확대 계획
부동산	광업권	국회동의 얻는 경우 허용	-
1차산업	보통작물 생산업	금지	-
	육우사육업	금지	'99. 12. 31 외국인지분 50% 미만 허용
	고기도매업	금지	2000. 12. 31 외국인지분 50% 미만 허용
	주정제조업	내국인과 합작 경우 허용	'98. 12. 31 전면개방
	내수편어업 및 연근해어업	금지	-
운송	항공사	외국인지분 20% 미만 허용	'99. 12. 31 외국인지분 허용수준 50% 미만으로 허용
	국적선	금지	-
	내항화물·여객운송	외국인지분 50% 미만 허용	-
	외항화물운송	LNG, LPG, 제3국간 운송 및 카탈리선에 의한 컨테이너 화물운송 허용	'98. 12. 31 전면개방
	예선업	금지	-
통신	뉴스제공업	금지	'99. 12. 31 외국인지분 25% 미만 허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외국인지분 25% 미만 허용	'99. 1 개방범위 확대
	서적출판업	외국인지분 50% 미만 허용	-
	방송	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 30% 이하 허용	-
	유무선 전신전화	무선전신전화업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의 1/3이하 취득허용	'99. 1 개방범위 확대
금융보험	상호신용금고	금지	-
	투자자문회사	기존회사 지분참여시 외국인지분 50% 미만 허용	'98. 12. 31 전면개방
	국내보험회사와의 합작	금지	-
기타서비스	도박장운영업	금지	'99.5.1 카지노운영업 자유화

외국인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운송업 분야에서 현재 남아있는 제한조치들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한조치들이다.

(2) 방송·통신업

방송·통신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나 문화정체성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제한조치를 두고 있다. 뉴스제공업,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과 같은 언론 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유로 우리는 OECD 가입협상 당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한 적이 있다. 즉, 이 분야가 국민의 의식 및 사상을 다루는 정신문화산업으로서 국민의식과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외국의 거대자본의 유입이 가져올 정보·문화의 종속, 국내여론의 왜곡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적출판업의 경우 대중문화의 보호라는 이유 외에 국내출판시장의 영세성을 제한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업 역시 문화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무선전신업의 경우도 군사적 상황들을 고려한 국가안보의 논리로 제한을 두고 있다.

(3) 1차산업

보통작물생산업이나 육우사육업의 경우, 외국인이 이 분야에서 투자의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농민 보호라는 국민적 정서 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기도매업의 경우도 관련 영세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내수면어업과 연근해어업의 경우 국내 영세어민의 보호라는 측면이 배경에 있다.

(4) 기타

도박장운영과 국내 보험회사와의 합작, 상호신용금고도 제한하고 있다. 도박장운영의 경우 공공성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보험회사와의 합작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수 보험회사에 의한 시장지배를 방지하

기 위한 것이며, 상호신용금고의 경우는 국내관련 산업의 영세성을 이유로 제한을 두고 있다.

(5) 업종개방 확대조치의 평가

외환위기에 따른 자유화조치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내용은 다분히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목적보다는 국가안보, 문화의 보호, 공공성의 유지 등과 같은 선진국형 논리에 따른 제한조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案) 수립

정부는 1998년 7월 외국인투자의 촉진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한 기반시설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자본유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案)」을 마련하였다. 이 종합대책(案)은 기존의 ‘민자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案)은, 제도가 국제적 관행과 룰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절차가 투명하고 간소화되도록 하고, 적절한 수익의 보장과 위험분담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책임도 강화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금융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종합대책(案)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제도의 국제화 및 투명화 : 사업 실시 전 경제적·재무적·타당성 분

석을 의무화하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에 의뢰하며,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며 소유권 제한도 폐지하고, 모든 관리운영방식(BOT, ROT, Wrap Addition 등)을 허용하였다.

투자 수익의 보장과 위험 분담 : 철저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특성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정부간의 협상으로 투자수익률을 결정하고, 정부의 최소 요구사항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정부고시 사업은 최고 90%, 민간제안 사업은 최고 80%까지 수입이 보장되도록 재정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대상사업 공고시에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환율변동이 20%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 또는 국가환수기로 하였다.

민자사업의 금융여건 개선 : 자본금 투입 및 회수방식을 개선하여 의무화를 폐지토록 하고, 부채비율의 적용을 일정기간 배제하였다. 정부귀속 인프라 시설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20% 또는 50%로 인하하였다.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인프라 기금을 설치하여 상업적 차원에서 외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자도입의 확대가 가능토록 하였다.

기존 사업의 처리 방향 :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협상중이거나 사업계획서를 접수중인 사업은 새로운 제도와 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착공중이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기존 민자유치촉진법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추진하거나, 사업권 포기 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조건변경 내용을 수용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아. 공기업 민영화 추진

199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규모를 보면, 기업체수 108개(26개 기관, 82개 자회사), 총 고용인원 21만 4천명, 예산 약 99조원에 달하고 있다(<표 4-5> 참조). 그러나 이들은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핵심부문이 아닌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확대, 관리층을 중심으로 한 상위직 조직의 비대화,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책임성 결여,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표 4-5>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황(1988년 10월 현재)

	기관수(자회사)	인원(천명)	예산(조원)
◦ 정부투자기관	13(30)	85	44.0
◦ 정부출자기관	13(52)	129	54.9
합 계	19.7	214	98.9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정부는 1987년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포철 등의 일부 주식매각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이 미흡하였다. 1993년에도 주인 있는 경영을 목표로 58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 문제 등으로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1996~1997년에는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정부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 진정한 민영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정부는 공기업 부문에의 경쟁원리 도입, 책임경영체제 정착 및 경영효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그 결과로 1998년 7월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였다(<표 4-6> 참조).

〈표 4-6〉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완전 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종합제철(16) ◦ 한국중공업(3) ◦ 한국종합화학(1) ◦ 한국종합기술금융(1) ◦ 국정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대한송유관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합 계	5개 기관(21)	6개 기관

주: ()는 자회사 수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 민영화 1차 계획의 추진원칙은 다음과 같다.

- 책임경영의 실현을 위해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한다.
-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분매각, 자산매각,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발행 등의 매각 방법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영화를 추진한다.
- 종업원 및 국민의 참여를 위해 우리사주 및 국민주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1차 민영화 대상기관은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등 11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21개 출자회사이다. 이들이 검토대상 108개 공기업(모기업 26개, 자회사 82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로는 30%이지만, 종업원수 및 매출액으로는 70%에 달하

고 있다.

정부는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된 데 이어 8월에는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그 대상 공기업은 55개로서 모두 자회사이다. 이 중 12개는 완전 민영화, 28개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며, 나머지 15개 자회사 중 6개는 통폐합, 8개는 구조조정 대상이다. 그 나머지 1개인 YTN(연합TV뉴스)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무역자유화 확대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WTO 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1997년 말 이후 WTO 양허계획을 기초로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조기 폐지⁵⁷⁾, 무역관련 보조금의 조기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간소화, 조정관세 적용품목의 축소, 수입승인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년 3/4분기까지 IMF와의 7차에 걸친 합의에서 3개의 무역관련 보조금(수출손실보조금, 해외시장개척보조금,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의 폐지, 조정관세 품목수 축소, 잔존 보조금의 폐지 검토,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조기 폐지, 수입형식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 자유화조치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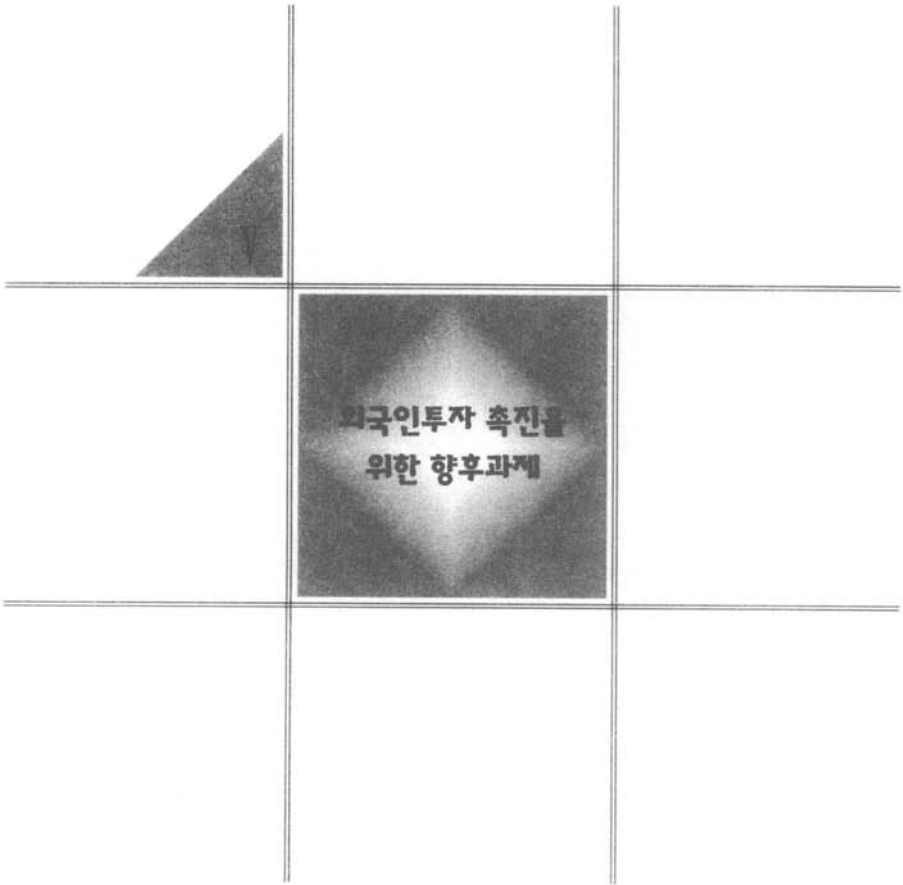
57) 정부는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맞춰 1978년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수입다변화제도를 199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WTO 등에 통보하였으나, 작년 말 IMF와의 협의시 당초 일정을 앞당겨 1999년 6월 말 완전 폐지키로 약속하였다. IMF에 8월 15일까지 제출한 '수입증명절차(Import Certification Procedures) 투명성 제고 및 절차간소화 계획안'은 통합공고에 게시된 54개 개별법령 중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국내법이 제정된 경우'나 'WTO체제 출범 이후 이미 수입관련 규정들이 대폭 개선된 경우' 등을 제외한 총 23개 법령에서 5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998년 상반기중에 12개 법령에서 14건을 개선하여 총 70건의 수입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표 4-7> 무역자유화에 관한 IMF와의 합의내용

	합 의 내 용
<p>1차 의향서 (1997. 12.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수입제한승인제의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1999년까지) -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p>2차 의향서 (1997. 12.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정책 분야의 조기개방 구체화 · 1999년 상반기까지 수입다변화 품목(113개 품목) 단계적 폐지: 1997년말까지 25개 품목 폐지, 1998년 6월말까지 40개 품목 폐지, 1998년 12월말까지 32개 품목 폐지, 1999년 6월말까지 16개 품목 폐지 · 1998년 3월말까지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 조정관세 품목수를 62개에서 38개로 축소(1998.1) - 수입증명절차는 WTO 기준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강화함.
<p>4차 의향서 (1998. 2.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보조금: 3개의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1998.3), 잔본 모든 보조금 폐지 검토(1998. 11. 25)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113개 품목): 1997. 12. 30(25개 기초치), 1998. 6(40개), 1998. 12(32개), 1999. 6(16개) - 수입증명절차 간소화 계획 마련(1998. 8. 15)

자료: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그동안 외국투자자들은 우리의 법규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법에 대해 불만을 많이 제기해 왔다.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쳐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의 수만 줄이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꼭 필요한 규제의 경우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규제의 질(質)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한조건을 붙이는 이행의무 성격을 지닌 각종 규제도 고치고, 금융부문에 대한 중소 규모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야 한다.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투자유인(投資誘引: 인센티브)제도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재정적 부담을 갖고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공장부지의 임대료를 낮추어 주며, 도로건설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 등을 말한다.

최근 들어 투자대상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투자유인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시장통합 및 정보기술 발전이 심화되면서 한 국가에서 보다 많은 국가의 시장을 관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대상 지역의 결정이 조세수준이나 투자유인 등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cGuire 1986, Papke and Papke 1986, Blair and Premus 1987, Newman and Sullivan 1988, Walker and Greenstreet 1991, Hines 1993, Bartik 1994, Cummins and Hubbard 1995, Koropecjy 1996, Hines 1996).

가. 외국의 투자유인제도 사례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주요 목적은 선진국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 및 고용창출에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기술고도화에 있다. 또한 투자유인은 선진국의 경우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개도국의 경우 주로

조세감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영국

영국의 투자유인은 주로 고용·직업훈련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 형태이며, 일부 세액공제 및 가속감가상각의 조세감면 형태도 있다. 투자유인은 기본적으로 국내·외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보조금 형태의 투자유인은 크게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 RSA)과 지방정부 투자유인 패키지(Local Package)의 형태로 구별된다. 前者는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투자보조금이다. 後者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유인으로서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공장입지, 수출전략개발, 사업개발 등에 관련된 비용지원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하는 투자유인에서 지역선별보조금과 지방정부 투자유인 패키지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前者가 전체 투자유인의 70%를, 後者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유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통 지역선별보조금 제공 여부 및 그 수준이 먼저 결정된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이를 참조하여 투자유인 패키지의 내용을 투자자와 협상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역선별보조금은 중앙정부 재원에서 지급되며, 영국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 패키지는 지방정부가 독자 재원으로 재량권을 갖고 운영한다.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RSA) 운용 사례

RSA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지역(Development Areas)과 중간지역(Intermediate Areas)이라는 지원대상 지역(Assisted Area)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및 상업의 모든 분야에 대해

RSA가 지급되며, 통상산업부는 RSA지원이 배제되는 산업리스트를 작성·적용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투자프로젝트는 ① 실행가능성(viability) ② 부가성(addi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고용연계성(employment link) ⑤ 최소의 공공자금 투입(public sector contribution)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RSA의 수준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고용당비용(cost-per-job), 순보조금등가액(net grant equivalent) 및 유럽집행위원회가 설정한 상한선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결정은 런던의 통상산업부가 제정한 지침에 따른다.

우선 관할 관청의 회계지원팀이 작성한 프로젝트의 재무 보고서(기업의 시장지위, 과거 사업내용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이 포함됨)와 심사담당관이 관련 산업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행한 해당 산업분야의 현황, 기술발전 현황, 신청기업의 경영자, 근로자 및 장비 등에 대한 일반적 평가보고서가 업계, 노조 및 전문가 등 무보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에 제출되며, 이 자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RSA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관할관청은 투자자에게 RSA 지급승인서를 보낸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지속적 경제성장, 기업구조조정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및 특별 투자유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투자유인은 대표적으로 개척자지위(Pioneer Status)와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가 있다. 前者는 법인세를 5년간 70% 면제하며, 後者는 법정소득에서 자본투자액의 60%를 공제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특별 투자유인은 전략적 프로젝트와 기타 중요산업에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5~10년간 개척자지위 부여

및 투자소득공제, 수입세 면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조금 형태의 투자유인으로 산업기술지원기금(중소기업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과 인적자원개발기금(교육훈련비 보조) 등이 있다.

투자유인의 대부분은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인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MIDA)에서 관할한다. 투자유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수준은 수출비중, 부가가치, 기술수준, 생산공정, 기능개발, 연구개발 수준, 국내인참여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 확대, 지역총괄본부 유치 등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대부분 조세감면 형태이나, 일부 보조금 형태의 투자유인도 제공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효율적 사회간접자본, 양질의 노동력, 자유로운 기업환경 등 우수한 투자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조세감면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초우량 다국적기업만을 유치하려는 국가 발전 전략에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인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제공되는데, 개척자지위 부여, 투자소득공제 제공, 개발·확대 지원, 해외차입금 및 로얄티지급 지원, 지역총괄본부 및 사업총괄본부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으며, 5~10년간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가능), 원천징수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혁신개발프로그램, 독창적 신기술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해당비용의 50~70%를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인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ureau : EDB)에서 관할되고 있는데, EDB는 투자유인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수혜 여부 및 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나.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유인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8년 7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했으며, 1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체 3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투자유인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9조(법인세 등의 감면)~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18~20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의 9개 조항이다.

(1) 조세 및 임대료의 감면 기간과 대상업종 확대(제9조 및 제13조)

국세(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이 종전의 '5년 100%, 그후 3년 50%'에서 '7년 100%, 그후 3년 50%'로 확대되고, 고도기술 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에 한정되었던 감면대상사업에 첨단산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었다.⁵⁸⁾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제9조, 제13조, 제14조)

지방세의 경우 감면대상 조세에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추가하고, 감면기간과 비율은 8~15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국유재산에 한정되었던 사용, 대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까지 확대하고, 임대기간은 20년에서 50년 이내(갱신 가능)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단부지 가격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급해 주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외국인투

5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로서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업종이 9월 말부터 정밀기계·생물산업 등 446개 첨단고도기술 분야로, 11월에는 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 개발 등 70개 산업지원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어 전체 감면대상은 과거 265개에서 총 516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제18~20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9~14조의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이외에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산림전용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며, 의료·교육·주택시설 등의 생활환경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다. 향후 개선방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유인제도는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단,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본부(OHQ)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지역내 투자유치 및 수출효과의 증대를 위해 보세구역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투자유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투자사업의 파급효과의 평가와 협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교육상 지원을 해주고 자율권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투자유인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비공개를 통한 유연성 제고 및 협상력 확대

만일 투자유인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국인투자가 들은 이러한 기준을 최저수준의 지원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최대 10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산업파급 효과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투자유인 수준 결정

모든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국내 경제에의 적합성, 국내 경제에의 파급효과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산업 측면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관부처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투자의 경제성, 산업파급 효과, 고용효과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유인 수준을 결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별 투자유인 제공 수준의 제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늘어나고 자율권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인센티브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투자유인을 경쟁적으로 늘려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경우,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투자유인의 수준을 투자액 대비 일정액 또는 고용 1인당 일정액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선은 영국에서의 사례처럼 대외비로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등이 정하여 내부지침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방안의 개선

외국인투자지역의 대상업종을 사전에 일부 업종에만 한정시키지 말

고 지역별 특화전략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 대해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지역 내에서도 파급효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개별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다른 중소기업들의 최종 투자결정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입주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⁵⁹⁾ 아울러 순수 국내기업들의 동반 입주도 가능하게 하여 외국기업들의 중간재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산업 파급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예컨대, 다수의 기업이 특정 지역에 입주하기 위해 지정기준에 합치하도록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이후 소수의 참여기업들이 투자의향을 철회하였을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나머지 기업들이 초기에 약속받은 지원을 받게 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투자결정을 함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가. 투자자관계관리의 개념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장애 요인으로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런 외국인비용을 극복하고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제, 즉 투자자관계관리(Investor Relation) 체계가 잘 되어 있다면 외국인들은 외국인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아직 투자자관계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느끼는 실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홍보 및 투자유치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효율적인 투

외국인비용과 투자자관계관리

외국인비용은 언어문제, 정보부재, 행정규제, 법률문제 등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불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투자자관계관리는 기본적인 투자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자국의 투자환경의 우수성을 전세계의 유망투자자에게 홍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공장설립후 사업활동지원, 사후관리 등 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자관계관리 체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투자자관계관리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

투자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해외에 홍보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투자실행단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다.

또한 투자자관계관리의 하위개념인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도 매우 중요하다. 원스톱 서비스는 일련의 서비스 및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투자자가 여러 기관이나 창구를 일일이 접촉할 필요없이 단일창구 혹은 장소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장설립까지의 전과정 및 부품공급업체 알선, 마케팅활동 지원, 주재원의 주거 및 생활여건 지원 등 투자진출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 북아일랜드의 원스톱 서비스(대우전자 유치 사례)

대우전자는 1988년 영국 북아일랜드지역 투자시 북아일랜드 지방투자공사(IDB)의 원스톱 서비스로 6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하였고, 대우는 이 과정에서 단지 공장설계도만을 IDB에 제출하였다. IDB의 공장설립팀은 대우로부터 공장설계도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통 6~8개월 내에 부지조성, 생산라인 설치까지 전 공정을 완성해 투자자에게 양도하였다. 공장설립팀은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설계, 자금조달, 회계 등 전문분야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팀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공장을 긴급히 가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공사만을 완공한 후(통상 2개월 소요) 기계설치나 생산라인의 건설은 투자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또한 공장건설 비용의 최고 50%까지 무상지원하고 나머지는 20년 분할상환하도록 하였으며, 공장임대료도 최고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북아일랜드 정부가 책임지는 등 요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북아일랜드 정부에서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OECD 조사에 의하면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04개 개도국 중 10여개 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적인 투자전담기관(Centers, Chambers, Societies, Boards, Federations, Committees 등의 이름으로)을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⁶⁰⁾ 이와 같이 해당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설립한 것은 그만큼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투자자관계관리 필요성의 증대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각국은 경쟁적으로 투자자관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채위기로 인해 차입이 어렵게 된 개도국들은 차관 대신에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동구권국가들이 세계경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직접투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거시적인 측면 외에 기업단위의 미시적인 환경변화도 투자자관계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다국적기업들은 운송·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전세계적 수요에 대응한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진출국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따라서 투자환경이 좋은 일부국가로 투자가 집중되게 되었다.

이 같은 거시적·미시적 환경변화로 인해 각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투자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홍보, 유치활동, 행정서비스 개선 등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투자자관계관리와 관련된 활동은 크게 이미지창출 활동, 직접적투자

60) OECD. 1993.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표 5-1〉 투자자관계관리의 방법

이미지창출	직접적투자창출	사후서비스
① 일반 매체 광고	⑥ 직접우편 및 텔레마팅 시행	⑫ 사후서비스 제공
② 투자박람회 참가	⑦ 산업별 투자사절단 파견 및 수행	
③ 산업별 매체 광고	⑧ 산업별 정보세미나 개최	
④ 일반투자사절단 파견	⑨ 특정기업에 대한 연구 및 직접방문 (company visit) 등의 유치활동	
⑤ 투자기획 세미나 개최	⑩ 투자자문서비스 제공	
	⑪ 투자신청·허가과정의 가속, 원활화	

창출 활동, 사후서비스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활동별로 이용가능한 기술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자관계관리 사항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 등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 1항). 또한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괄심의제와 자동승인제를 도입하였다(同法 제17조 1항 및 5항). 아울러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 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同法 제27조).

라. 향후 개선방안

투자자관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유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이외에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권한을 최대한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투자가 발생하는 지역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KOTRA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타당성조사 관련 서비스는 KOTRA가 감당하기 힘든 과제이므로 외부용역이나 바운티/로열티(Bounty/Royalties) 계획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¹⁾

바운티 / 로열티(Bounty / Royalties) 계획

우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부담하여 에이전트에게 타당성 조사를 대행시킨다. 이 경우 투자의향이 있으나 타당성 조사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전액 비용부담하여 대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가 있으나 공동부담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타당성조사 비용을 투자기업과 정부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투자실행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투자가 성사되면 정부는 투자성사에 도움을 준 에이전트에게 타당성

61) Bounty / Royalties 계획에 대해서는 Contractor, Farok J. 1995.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Vol IX, No. 1, Spring의 내용을 참조.

조사비용 외에 투자자금의 일정비율을 사례금(bounty)으로 지불한다. 사례금은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성사 후 처음 몇 년 동안 투자로 인한 생산액의 일부를 투자성사에 도움을 준 에이전트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한다.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에이전트는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벌이고, 또 재투자를 하게끔 노력하게 된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투자유치 활동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투자유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유력 컨설팅사와 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것이고, 광범위한 컨설팅사 및 회계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KOTRA가 다루기 힘든 영역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투자 에이전트로 하여금 투자가 실행되기 전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예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특히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하게 된다.

4. 국경간 M&A의 활성화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5월 국경간 M&A를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자유화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M&A 형태의 외국인투자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경간 M&A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우선 기업의 인수·합병시 복잡한 절차와 함께 높은 조세부담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 관련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현재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의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며, 비상장법인의 증권감독위원회 등록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합병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청산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감면, 합병시 불용자산(不用資産)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병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M&A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금지원, 직접적인 중개참여 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소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지닌 정부가 민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M&A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M&A시장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풍부한 자금과 인력으로 M&A시장에 참여할 경우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과 시장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상호 역할분담과 정보네트워

크 형성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보인다.

또한 현재처럼 국내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투자가의 방문이나 요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 외국인투자가가 기업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충실한 기업조사보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기업의 장점, 회생가능성의 요인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하고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펴야 한다.

고용조정제도는 기업의 M&A와 관련하여 최대의 쟁점사항이다. 사실상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정 합의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써, 종전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정리해고가 법제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고용조정제도가 엄정하게 시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실기업에 대한 M&A를 전담하는 중개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부실기업 또는 부실채권 인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 투자기금으로서 벌처펀드(vulture fund)가 활성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장외증권 거래시장인 코스닥(KOSDAQ)시장을 주식시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투자성과의 회수가 용이한 벤처금융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코스닥증권(주)의 증자 등을 통해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사실상의 제2의 증권거래소로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공기업 관계자들이 해외매각의 목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해외매각을 단행할 경우 매각방식이나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8~1999년 중 민영화가 예상되는 한국통신의 경우 국제자본시장에 통신부문 주식에 탐증서를 예치하려는 신흥경제국들이 우리나라 외에도 21개국이나 되어 이들과의 극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⁶²⁾

그러나 공기업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에는 매각가격만 중시하여 간접적인 과급효과 및 대외신인도 제고효과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의 매각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관행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크므로 매각가격에 집착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통신산업을 민영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투아니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만, 터키, 태국,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Leiberman & Kirkness eds. 1998. *Privatization and Emerging Equity Markets*, World Bank & Flemings).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1998년 12월 OECD는 더이상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반면 상당수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취한 투자자유화 조치들이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한·일 투자협정 등 양자간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의 투자자유화 의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양자간투자협정을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신인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투자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한·미 투자협정 중 핵심사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해서는 일정수준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애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무역(수출입)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검사를 받고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중복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통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는 수입의약품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불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의약품에 대한 수입제한적 요소는 향후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수입제한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투자자유화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수입자유화는 소수의 기업만 남더라도 경쟁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⁶³⁾

따라서 수입선다변화 등 무역제한적 조치를 철폐하는 것과 함께 통관시의 검시절차도 간소화하고, 국제수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하여

63) Blomström, M. and A. Kokko. 1996.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st Countries: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45, Washington, D.C.: World Bank, pp. 30-32.

통관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입의약품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수입제한 조치는 통상분쟁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투자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입품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행정규제 및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요구된다.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들 중 상당수가 우리사회의 부패, 준법의식의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 경영진들은 우리 기업들의 접대비 문화가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다수의 외국인 경영진들은 건물소유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이하로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한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및 준법의식의 결여 문제와 함께 법규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상당수의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진들은 관계당국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 및 환경관련 법규의 집행이나 세무감사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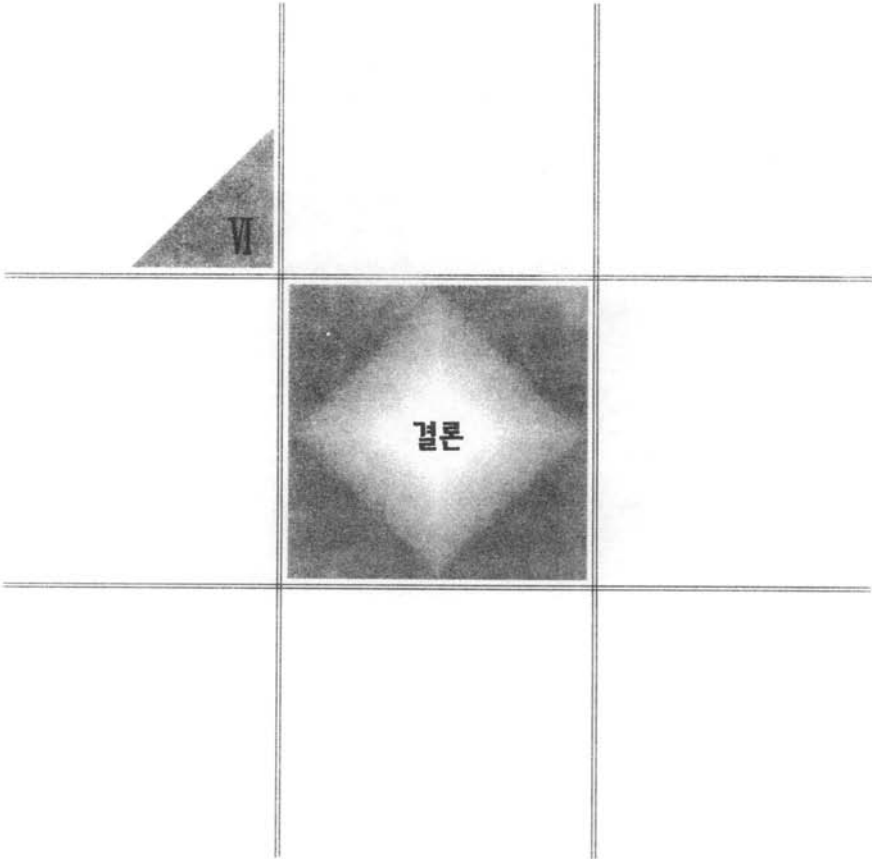
9. 내부역량의 강화

첨단기술을 지닌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지식·기술을 함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교육환경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를 개방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기초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엔지니어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격 및 출입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자녀교육, 의료시설, 본국에서 사용하던 생필품 구매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외국인투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통계(투자액, 부가가치, 고용, 생산, 수출입, R&D 등)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정규적인 조사 방식의 도입을 통해 투자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인투자가 고용창출과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현재 선진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21세기 세계경제의 새로운 분업체계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반 법규를 개정하는 등 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규 및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화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각 경제주체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일선공무원들은 통제지향적이고 관료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기업들 또한 어려울 때만 외국기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기업과의 협상시

한편은 이익을 보고 다른 한편은 손해를 보는 'win-lose game' 식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win-win game'을 창출하기 위한 파트너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소비자와 근로자들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취업과 생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합리적 소비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내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이제는 외국인 소유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우리 기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산물품이라고 무조건 배격하거나 또는 맹목적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가격과 품질을 엄정하게 따져 보고 질 좋고 값싼 물건을 구입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종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유도하도록 하고, 공무원 및 국내기업의 사원연수시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일선 공무원과 국내기업의 배타적 태도를 전환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초중등교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기구에 지방유지, 노조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을 참여시켜 투자유치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는 있다. 특히 M&A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법규와 경쟁정책의 정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경영권 취득보다 단기적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를 도입하고, 모기업과의 수출 입가격 조작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는 단지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해서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시장을 보고 어차피 들어오는 일정수준의 투자 뿐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인하고 환대하며 국내기업과 같이 격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개방된 사고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관호. 1998.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 한·미 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자료논문 98-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득갑. 1998. 「영국의 IMF 지원금융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月刊 『삼성경제』, 1998. 2.
- 김영환. 1998. 「IMF 구제금융 이후 멕시코 경제회생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月刊 『삼성경제』, 1998. 2.
- 김준동. 1996.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7.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 박대근·이창용. 1998.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 손찬현·송유철. 1998. 「시장개방: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왕윤종·김종근. 1998. 「국내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국경간 M&A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온기운외. 1998.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KIET 정책자료』, 1998. 1.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단체주의계약제도 개선방안」. 1998. 8.
- Agosin ed.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Aho, C. M. and M. Levinsohn. 1988. *After Reagan: Confronting the Changed World Economy*.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New York.
- Aitken, B., Hanson G. D. and A. Harrison. 1994. "Spillover,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 Behavior." NBER Working Paper No. 4967. December.

- Alter, R.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Employment Overview on Analytical and Economic Policy Issu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Employment*, OECD.
- Bartik, Timothy J. 1994. "Jobs, Productivit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What Implications Does Economic Research Have for the Role of Government?" *National Tax Journal*. pp. 847-861.
- Behrman, J. and H. Wallender. 1976. *Transfer of Manufacturing Technology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Cambridge, Mass.: Ballinger.
- Blair, J. and R. Premus. 1987. "Major Factors in Industrial Location: A Review."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1, no.1.
- Blomström, M. 1989. *Foreign Investment and Spillovers: A Study of Technology Transfer to Mexico*. London; Routledge.
- . 1990.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Manufacturing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United Nations.
- . 1991. "Host Country Benefits of Foreign Investment." in D.G. McFetridge, ed., *Foreign Investment,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Toronto and London; Toronto University Press.
- Blomström, M. and A. Kokko. 1996.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st Countries: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45, Washington, D.C.: World Bank.
- Borensztein, E., Gregorio, J. D. and J. W. Lee. 1998.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 pp. 115-135.
- Bouton, L. & Sumlinski, M. 1997. "Trends in Privat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FC Discussion Paper No. 31.
- Caves, R.E. 199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E.K. 1983. *Multinational Corporations, Technology and Employment*. London; Macmillan.
- Chung, W., Mitchell, W. and Bernard Yeung. 199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ost Country Productivity: The Case of the American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Discussion Paper No. 367. Institute of Public Policy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 Contractor, Farok J. 1995.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Vol IX, No. 1. Spring.
- Cowling, K. and R. Sugden. 1987.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ism*. London: Wheatsheaf Books.
- Cummins, J. G. and R. G. Hubbard. 1995. "The Tax Sensitiv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in Feldstein et al. (eds) *The Effects of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rschenberg, I. 1987. "The Training and Spread of Managerial Know-How. 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national and Other Firms in Kenya." *World Development*. Vol. 15, 931-939.
- Glickman, N. J. and Douglas P. Woodward. 1989. *The New Competitors, How Foreign Investors are Changing the United States Economy*. New York: Basic Books
- Hines, J. R., Jr. 1995. "Taxes, Technology Transfer, and the R&D Activities of Multinational Firms." in Feldstein et al. (eds) *The Effects of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nes, J. R., Jr. 1996. "Altered States: Taxes and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merica." *American Economic Review* 86(5). pp. 1076-1094.
- Jenkins, R. 1990. "Comparing Foreign Subsidiaries and Local Firms in LDCs: Theoretical Issues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26, 205-228.
- Katz, J. M. 1987. *Technology Creation in Latin American Manufacturing Industries*. New York; St. Martin's Press.
- Keesing, D. B. and S. Lall. 1992. "Marketing Manufactured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arning Sequences and Public Support." in G. Helleiner, ed., *Trade Policy,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New Perspectives*. Oxford; Clarendon Press.
- Kim, J.-D. 1997.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KIEP Working Paper 97-0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im, J.-D. and S.-I. Hwang. 1998.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KIEP Working Paper 98-04,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okko, A. 1994. "Technology, Market Characteristics, and Spillover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3, 279-293.
- . 1996. "Productivity Spillovers from Competition between Local Firms and Foreign Affili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thcoming.
- Koropeckyj, Sophia. 1996. "Do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 Matter?" *Regional Financial Review*, February.
- Krugman, Paul. 1998. "What Happened to Asia," mimeograph, MIT.
- . 1998. "Fire-Sale FDI," mimeograph, MIT.
- Lall, S. 1980. "Vertical Interfirm Linkages in LDCs: An Empirical Stud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2, 203-226.
- Leiberman & Kirkness eds. 1998. *Privatization and Emerging Equity Markets*. World Bank & Flemings
- Little, J. S. 1988.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United States Employment During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 McAleese, D. and D. McDonald. 1978. "Employment Growth and Development of Linkages in Foreign-Owned and Domestic Manufacturing Enterpris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0, 321-339.
- McGuire, Therese J. 1986. "Interstate Tax Differentials, Tax Competition, and Tax Policy." *National Tax Journal*. pp. 367-373.
- Megyery & Sader. 1996. "Facilitating Foreign Participation in Privatization," FIAS Occasional Paper 8, 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 Newman, Robert J. and Dennis H. Sullivan. 1988. "Econometric Analysis of Business Tax Impacts on Industrial Location: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Journal of Urban Economics* 23. pp. 215-234.
- OECD. 1993.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Employment*.
- . 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rom Six Emerging Economies*.

- . 1998. *Open Markets Matter: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 . 1998. "Survey of OECD wor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DAFFE / DOC / IIN(98)1, May 1998, pp. 25-26.
- Papke, James A. and Leslie E. Papke. 1986. "Measuring Differential State-Local Tax Liabilit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Business Investment Location," *National Tax Journal*, pp. 355-366.
- Reuber, G.L., with H. Crookell, M. Emerson, and G. Gallais-Hamonno. 1973.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Oxford : Clarendon Press.
- Riedel, J. 1975.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Export-Oriente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 Developing Country : A Case Study of Taiwa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1, 505-528.
- Rivera-Batiz, F.L. and L.A. Rivera-Batiz. 1994. "Europe 1992 and the Liberalization of Direct Investment Flows : Services versus Manufacturing."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ume 6, Number 1, pp. 45-57.
- Sader, F. 1995.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and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1988-1993," FIAS Occasional Paper 5, World Bank, Washington
- Silanes. 1997. "Determinants of Privatization Pric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XII (4) : 965-1025.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년호.
- UNCTAD/ICC. 1998. *The financial crisis in Asi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8.3.
- United Auto Worker. 1996. Research Bulletin, June.
- Walker, R. and D. Greenstreet. 1991. "The Effect of Government Incentives and Assistance on Location and Job Growth in Manufacturing." *Regional Studies* Vol. 25, No. 1.
- Wasow, B. and H. Hill. 1986. *The Insurance Industry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98. *Global Development Finance*.
- World Bank. 199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Yoshihara. 1988. *The Rise of Ersatz Capital in South-East Asia*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WORKING PAPER(영문) / 資料論文(국문)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Chung-Soo Kim / 비매품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90.8) / L.K. Mytelka / 비매품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91.1) / 郭承濬 / 비매품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朴泰鎬 / 비매품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6) / 洪裕洙 / 비매품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柳莊熙 / 비매품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91.11) / Taeho Bark / 비매품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Jang-Hee Yoo / 비매품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93.1) / In-Soo Kang / 비매품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Jai-Won Ryou · Byung-Nak Song / 비매품
-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Sung-Hoon Park / 비매품
-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93.6) / Wook Chae / 비매품
-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 Market(93.10)/Chung Ki Min/비매품
-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93.12)/Joo-Sung Jun/
비매품
-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93.12)/Yoo Soo Hong, 비매품
-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93.12)/Jin-Soo
Yoo/비매품
-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
tion(94.1)/Chang Jae Lee /비매품
-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94.8)/JeHoon Park /비매품
- 94-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94.12)/Yoo Soo Hong (비
매품
- 95-01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ment Coun-
tries(95.12) /Jae-Jung Kwon /비매품
- 96-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 A Korean Perspective(96.4) /Wan-Soon Kim 비매품
- 96-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 Retro-
spects and Prospects(96.4)/Yun-Jong Wang · Jung-Dong Kim /비매품
- 96-03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96.4) /Suchan Chae /비매품
- 96-04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 Korea's Role and Prio-
rities(96.8) /Chan-Hyun Sohn /비매품
- 96-05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96.10) /Wook Chae /비매품
- 96-0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96.12)
/Joongi Kim · Jong Bum Kim /비매품
- 96-07 Competition policies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
prises(97.4) /Young-soo. Woo /비매품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 The Case of Korea
(97.8) / June-Dong Kim / 2,000원
-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97.12)/Jaebong Ro · Hyung-do
Ahn / 2,000원
- 97-03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97.12) /王允鍾 ·
李晟鳳 / 3,000원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97.12)/Inkyo Cheong / 3,000원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97.12)/李晟鳳/5,000원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92.12)/Jong Bum Kim / 2,000원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97.12)/ Sang-In Hwang/ 2,000원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97.12)/Seunghee Han · Inkyo Cheong / 5,000원
-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研究 : 멕시코, 泰國,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97.12)/金元鎬 外/7,000원
- 97-10 韓 · 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97.12)/李鍾華/5,000원
-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97.12)/鄭鎔株/5,000원
- 98-01 韓 · 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98.5)/程 勳 · 李鴻培/5,000원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98.7)/Mikyung Yun / 5,000원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 韓 · 美 投資協定の 意義 및 展望(98.8)/김관호/ 7,000원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98.9)/June -Dong Kim Sang-In Hwang / 5,000원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 1948 ~ 1998(98.9)/Chan-Hyun Sohn 外/5,000원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98.10)/Chong Wha LEE / 5,000원
-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 英國(98.12) / 申東和 / 5,000원
-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 인도네시아(98.12) / 金完仲 / 7,000원
- 98-12 APEC's Ecotech : Linking ODA and TIL(98.12)/Hyundo Ahn · Hongyul Han / 2,000원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98.12)/김준동 外/7,000원

자료논문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1998년 12월 24일 인쇄
199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29, FAX 3460-1077

인쇄 비봉출판사 TEL: 3142-6555, 대표 박기봉

등록 2-301(1980. 5. 23)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4034-5 94320
89-322-4027-2(세트)

값 5,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1998년 11월부터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 투자부문 (계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 FAX : 02) 3460-1144

■ 회원특권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 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A	B	C	D	E	F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무역·투자	구조경제	미주경제	이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교환기관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 <input type="checkbox"/>							
이사 <input type="checkbox"/>							
OB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